

# 2024 신라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2024. 3.

신라대학교

---

# 목 차

---

## 제1편 총칙

|              |   |
|--------------|---|
| 제1장 개요 ..... | 1 |
| 제2장 현황 ..... | 2 |

## 제2편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계획

|                                    |    |
|------------------------------------|----|
| 제1장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 10 |
|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계획 .....           | 16 |
| 제3장 자연재해 대비 계획 .....               | 23 |
| 제4장 원자력 사고·재난 대비 계획 .....          | 30 |
| 제5장 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계획 .....          | 33 |
| 제6장 학교 감염병 대비 계획 .....             | 37 |
| 제7장 학생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대비 계획 .....    | 51 |
| 제8장 학교 식중독 사고 대비 계획 .....          | 56 |
| 제9장 학생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근절 계획 .....    | 62 |
| 제10장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제고 계획 .....       | 71 |
| 제11장 학생 교외활동 안전교육 계획 .....         | 75 |
| 제12장 교내 대학 축제 안전관리 .....           | 71 |
| 제13장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계획 ..... | 82 |
| 제14장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계획 .....          | 86 |

## 제3편 부록

|                                |     |
|--------------------------------|-----|
| 제1장 재난상황실 운영 .....             | 101 |
| 제2장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현황 ..... | 102 |
| 제3장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 현황 .....    | 103 |

# 제1편 | 총칙

## 제1장 | 개요

---

### 1. 법적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2조 및 제23조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 2. 수립목적

-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교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비단계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3. 집행계획 수립대상

- (자연재난 분야)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지진(해일), 낙뢰, 황사·미세먼지, 폭염
- (사회재난 분야) 화재 및 폭발, 방사능 누출 사고, 감염병
- (안전관리 분야) 교통안전, 학생외부활동, 대학실험실, 교육시설물, 체험활동, 학교·성폭력, 자살예방, 식품안전, 산업재해, 중대재해

## 제2장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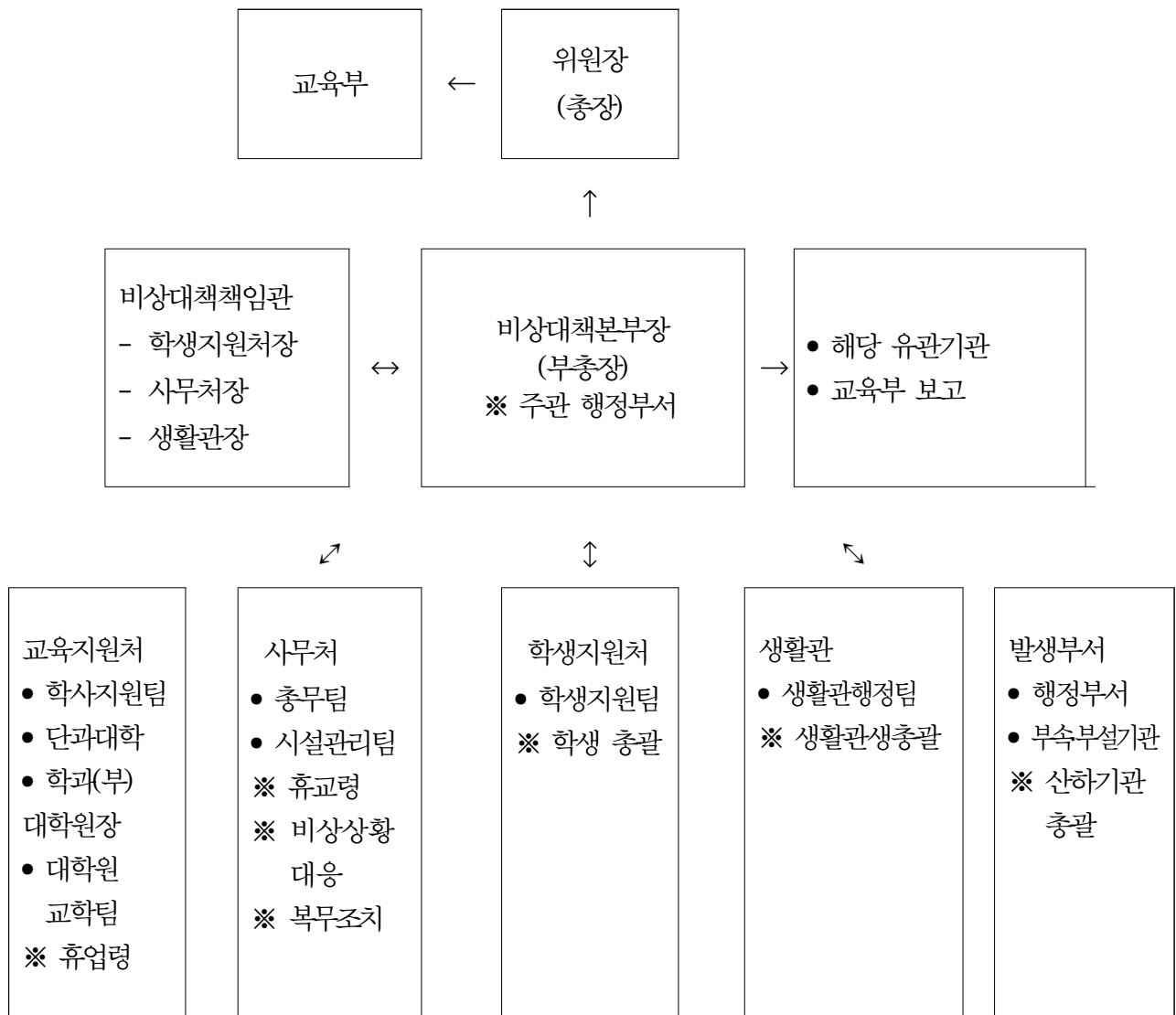
### □ 주요임무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괄
-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체화
-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 대학 안전관리 강화

### □ 재난안전 유형별 관리주체

| 업무                | 상황관리 분야                       | 주관부서  | 협조·지원부서(기관내)                                  |
|-------------------|-------------------------------|-------|-----------------------------------------------|
| 주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br>발생한 사고         | 총무팀   | 시설관리팀<br>학생지원팀<br>장애학생지원센터<br>학생상담센터<br>전자정보팀 |
| 협조<br>지원<br>(부처간) | 풍수해<br>(주관기관: 국민안전처)          | 시설관리팀 | 총무팀, 학생지원팀                                    |
|                   | 지진<br>(주관기관: 국민안전처)           | 시설관리팀 | 총무팀, 학생지원팀                                    |
|                   | 황사/미세먼지<br>(주관기관: 환경부)        | 학생지원팀 | 총무팀,<br>장애학생지원센터                              |
|                   | 폭염                            | 학생지원팀 | 총무팀,<br>장애학생지원센터                              |
|                   | 화재 및 폭발<br>(주관기관: 국민안전처)      | 시설관리팀 | 총무팀, 학생지원팀                                    |
|                   | 방사능 누출 사고<br>(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설관리팀 | 총무팀, 학생지원팀                                    |
|                   | 감염병<br>(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학생지원팀 | 총무팀                                           |
|                   | 산업재해, 중대재해<br>(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시설관리팀 | 총무팀, 시설관리팀,<br>생활관행정팀                         |

## □ 상황보고 체계



○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학교 안전사고 신속 보고체계 가동

- 안전사고 발생 최초보고 시 교육부 보고
  -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NDMS(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 피해현황 탑재를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 상황보고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관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 보고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1명 또는 부상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 유형별 관리체계

### ○ 재난 유형별 대응 기준

| 구분   |    | 시설관리팀 대응                                                  | 비상대책본부 가동                                     |
|------|----|-----------------------------------------------------------|-----------------------------------------------|
| 풍수해  | 태풍 | ○ 태풍주의보 발령 시                                              | ○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 시                              |
|      | 호우 | ○ 호우경보                                                    | ○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 시                              |
|      | 대설 | ○ 대설경보                                                    | ○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 시                              |
| 지진   |    | ○ 규모 4.0 ~ 4.9                                            | ○ 규모 5.0이상, 피해 발생                             |
| 지진해일 |    | ○ 지진해일주의보                                                 | ○ 지진해일주의보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
| 화재   |    | ○ 초기화재 발생 신고                                              | ○ 화재 연소 확산<br>○ 인명 피해 가능 시                    |
| 붕괴   |    | ○ 기상청의 자연재해(대설) 등 특보 발령<br>○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의 재난(화재, 폭발 등) 발생 | ○ 다수 인명피해 우려 상황 전개 시                          |
| 방사능  |    | ○ (백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 ○ (청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
| 전염병  |    | ○ 국가에 전염병 초기 발생시                                          | ○ 교내 전염병 감염자 발생 시                             |

○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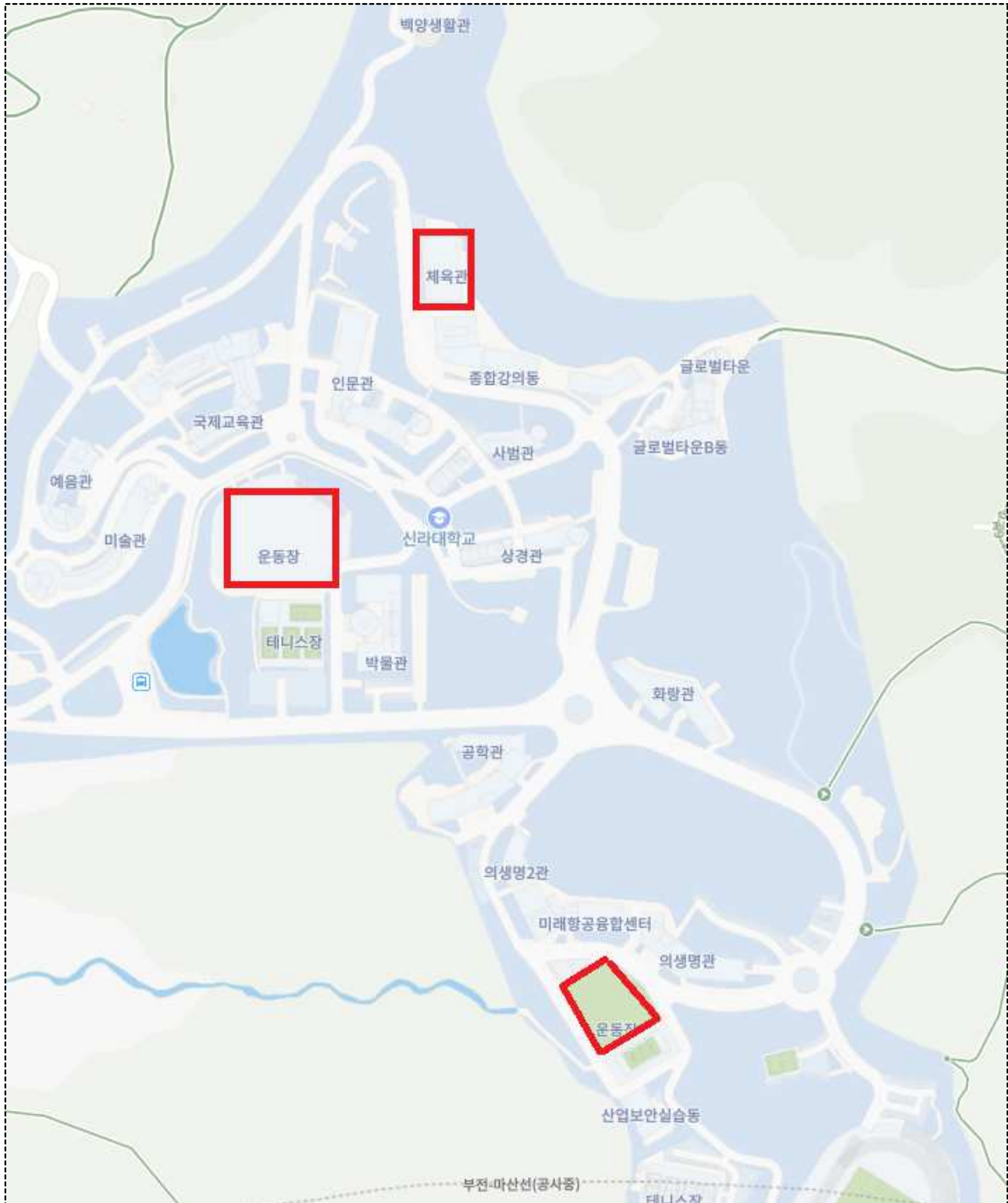
| 구성      |             | 주요임무                                                       | 근무자    |
|---------|-------------|------------------------------------------------------------|--------|
| 지휘<br>부 | 비상대책<br>본부장 | ○ 상황관리전담반 업무 총괄                                            | 부총장    |
|         | 책임관         | ○ 학생피해 현황 파악<br>○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지시                           | 학생지원처장 |
|         | 책임관         | ○ 학교 및 학교시설 피해현황 파악<br>○ 피해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br>○ 응급복구 추진상황 관리 | 사무처장   |
|         | 책임관         | ○ 기숙사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시<br>○ 학생안전 관리                           | 생활관장   |



##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분장

| 구 분                 | 업무 내용                                                                                                                                                                                                                                                                                       | 담당부서            | 관련근거                                                                                   |
|---------------------|---------------------------------------------------------------------------------------------------------------------------------------------------------------------------------------------------------------------------------------------------------------------------------------------|-----------------|----------------------------------------------------------------------------------------|
| 국가<br>재난관리<br>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관리·운영</li> <li>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총괄</li> <li>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사태 발생 시 교내 재난 관리 총괄</li> <li>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li> <li>학생 안전교육 기본정책 수립·시행</li> <li>위기대응 표준 및 실무매뉴얼 관리·운영 총괄</li> <li>정부연습, 안전한국훈련 실시 주관</li> <li>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정부업무 평가 담당</li> </ul> | 총무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r>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br>(대통령 훈령342호),<br>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br>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전통적<br>안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군 침투·도발 위기 대응 업무</li> <li>일반 테러 위기 대응 업무</li> </ul>                                                                                                                                                                                                | 총무팀             | 교육부 총무 3200                                                                            |
| 학생 건강<br>·<br>안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보건·급식·환경질환 예방대책 수립</li> <li>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대책</li> <li>학교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대책</li> <li>감염병실무대응매뉴얼 관리</li> <li>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심리적 위기지원</li> </ul>                                                                                                            | 학생지원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종합대책</li> <li>학교폭력근절 및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 수립</li> <li>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li> </ul>                                                                                                                                                  | 학생지원팀<br>학생상담센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li> <li>유치원 시설안전관리 강화</li> <li>유치원 급식·안전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 체계 강화</li> </ul>                                                                                                                                                            | 신라대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
| 시설<br>안전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 계획 수립</li> <li>교육시설 안전관리 총괄</li> <li>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복구</li> <li>교육시설물 재해·재난, 화재안전 분야 관리</li> <li>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li> <li>실무대응매뉴얼 관리 (다중밀집 대형화재 및 건축물 붕괴 등)</li> <li>실험실안전</li> </ul>                                          | 시설관리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r>자연재해대책법,<br>지진재해대책법,<br>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 산업재해<br>및<br>중대재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li> <li>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li> </ul>                                                                                                                                                                                  | 시설관리팀           | 산업안전보건법<br>중대재해처벌법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이버 안전 관리(사이버안전매뉴얼)</li> </ul>                                                                                                                                                                                                                       | 전자정보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 □ 재난 · 재해 대피도(대피장소)



## 5. 추진방향

비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속적 예방과 환경 조성



추진  
전략

1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2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3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4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5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 제2편 |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계획

### 제1장 |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1. 개 요

##### 가. 안전관리 목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최고의 캠퍼스가 되도록 교육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관리 및 보수를 통하여 구조적인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캠퍼스 조성

#### 2. 학교 시설물 현황

- 총 19개동, 연면적 145,802.21㎡

※ 2023년 2월말 기준

| 구분 | 총보유수 | 5년 미만 | 5년 이상<br>10년 미만 | 10년이상<br>20년미만 | 20년 이상 |
|----|------|-------|-----------------|----------------|--------|
| 합계 | 19   | 1     | 2               | 7              | 9      |
| 비율 | 100% | 5.26% | 10.52%          | 36.84%         | 47.36% |

#### 3. 안전점검 대상

가. 우리 학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

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다. 소방시설

라. 전기시설 및 승강기 설비

## 4. 추진계획

### 가. 건축물 안전관리

- 1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 각 구역별로 담당자를 선임하여 책임 관리하고, 사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조치
  - 점검시기 : 기상 및 계절변화에 따라 수시 점검
- 신·증축 공사장 안전계획
  - 시공업체로 하여금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재해 방지책 지시
  - 공사 주변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출입 통제 강화
  - 공사현장마다 안전관리자를 시공업체 별 선임하여 책임관리
  - 공사현장 주변의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안전사항 공지하여 사고방지
- 자체 건물 안전점검
  - 건물관리주체인 각 단과대학 또는 행정실 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사항 통보
  - 점검시기 : 반기에 1회 이상

### 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현황

| 구 분                 | 설치장소                                                  | 설치<br>개소 | 비 고                 |
|---------------------|-------------------------------------------------------|----------|---------------------|
| 액화석유<br>가스<br>(LPG) | 미술관(2), 국제교육관(2), 의생명관(2), 글로벌타운(1), 제3기숙사(1), 화랑관(1) | 9        | 실험실습실<br>및<br>일반영업용 |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정기점검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점검시기 : 매년 4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점검

점검장소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9개소

○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 가입시기 : 매년 3월 보험가입(일반영업용은 별도 가입)

다. 소방시설 안전관리

○ 소방계획서 수립

- 관련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시행시기 : 매년 12월 말까지 차기년도 계획 수립

○ 소방안전교육·훈련

- 관련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교육훈련 계획

| 순번 | 시행 시기 | 교육·훈련 명       | 교육 대상 |
|----|-------|---------------|-------|
| 1  | 6월    | 자체 소방훈련       | 교직원   |
| 2  | 11월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훈련 | 교직원   |

○ 자체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점검계획 : 매월1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년 중 1회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

○ 소방방재실 운영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운영방법

※ 소방실 인력에 의한 전 교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

※ 수신기 작동 시 방재실 감시인력 및 상황실 24시간 출동대기

○ 건물 화재보험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가입시기 : 매년 12월 말까지 보험가입

라. 전기시설 안전관리 계획

○ 전기시설 정기검사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5조

- 점검시기 : 매3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점검

- 점검장소 : 인입 수·변전실

○ 자가용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 관련법규 : 전기안전관리규정(자체)

- 점검시기 : 월1회 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한 점검

- 점검장소 : 전 건물 변전실

마.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설치현황

| 구 분   | 설치장소                                                                                                                                                                               | 수량 | 비고                            |
|-------|------------------------------------------------------------------------------------------------------------------------------------------------------------------------------------|----|-------------------------------|
| 엘리베이터 | 미술관(1), 국제교육관(1), 인문관(2),<br>사범관(1), 예음관(1), 중앙도서관(1),<br>상경관(1), 공학관(2), 백양생활관(3),<br>미래향공유평합관(1), 의생명2관(1),<br>화랑관(1), 의생명관(1), 글로벌타운(3),<br>글로벌타운C동(1), 종합강의동(2),<br>산업보안실습동(1) | 24 | 휴지<br>공학관(1),<br>중앙도서관<br>(1) |
| 덤웨이터  | 어린이집(1)                                                                                                                                                                            | 4  | 중앙도서관(1),<br>백양생활관(1)<br>사용안함 |

○ 정기검사

-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 점검시기 : 매년 1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한 검사
- 검사장소 : 종합강의동 외 16개동 (25대)

○ 자체점검

-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 점검시기 : 매월 1회 자체점검 실시
- 점검장소 : 종합강의동 외 16개동 (25대)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가입시기 : 매년 3월 가입(27대) - 미사용 승강기도 보험대상

바. 대학 계절별 안전관리 계획

○ 봄

- 해빙기 대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 ※ 축대, 옹벽, 담장 등의 시설 상황 확인
  - ※ 열거나 눈에 묻혀 있던 옥내·외 전기시설의 점검 철저
  - ※ 도로의 침강, 파손 등을 정밀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여름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취약지역 안점점검

※ 상습침수, 노후시설, 붕괴 위험 등이 있는 시설은 특별관리 및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

※ 옹벽·축대, 배수로, 건물의 옥상바닥 등 평소관리에 소홀한 부분 점검

○ 가을

- 동절기 대비 각종 시설망(가스, 물, 전기) 정비

○ 겨울

- 대설피해 최소화 방안 구축
- 난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 결빙 지역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 5. 추진일정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건축물 안전점검     |      |    |    |    |    |    |    |    |    |     |     |     |
| LPG사용시설 정기점검 |      |    |    |    |    |    |    |    |    |     |     |     |
| 소방시설 자체점검    |      |    |    |    |    |    |    |    |    |     |     |     |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      |    |    |    |    |    |    |    |    |     |     |     |
| 전기시설 안전점검    |      |    |    |    |    |    |    |    |    |     |     |     |
| 승강기 자체검사     |      |    |    |    |    |    |    |    |    |     |     |     |
| 승강기 정기검사     |      |    |    |    |    |    |    |    |    |     |     |     |
| 계절별 안전점검     |      |    |    |    |    |    |    |    |    |     |     |     |

## 제2장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계획

### 1. 개 요

가. 우리대학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연구실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2. 재난관리체계 (조직도)

|             |
|-------------|
| 위원장(부총장)    |
| 당연직 위원(14명) |
| 교육지원처장      |
| 사무처장        |
| 학생지원처장      |
| 일반대학원장      |
| 보건복지대학장     |
| 항공대학장       |
| 공과대학장       |
| MICT융합공과대학장 |
| 디자인대학장      |
| 토양분석센터장     |
| 공용장비지원센터장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 3. 현황 및 실태

#### 가. 관리대상 연구실 현황

| 연 번 | 기 관 명      | 합 계 |
|-----|------------|-----|
| 1   | 보건복지대학     | 61  |
| 2   | 공과대학       | 38  |
| 3   | MICT융합공과대학 | 43  |
| 4   | 디자인대학      | 53  |
| 5   | 사범대학       | 4   |
| 6   | 항공대학       | 13  |
| 7   | 부설기관       | 10  |
| 합 계 |            | 222 |

#### 나. 추진 목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에 규정된 각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산·경남지역의 대학 환경안전분야 선도적 역할 수행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의 확산

-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확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나. 정기·자체점검 강화 및 일상안전점검 정착 유도

- 정기·자체점검 강화 및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일상안전 점검 내실화

#### 다.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실시

- 정부의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연구실 안전 취약 부분의 환경을 개선코자 함.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대상 조사 및 정부지원금 조달 계획 수립

- 연구실 내 위험물 관리를 위한 안전캐비닛 설치
-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 전용 밀폐형 시약장 설치

라.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상해보험 가입

- 연구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 연구실활동종사자 가입 대상 조사 및 가입 현황의 게시

마. 연구활동 종사자 건강검진(일반·특수) 실시

- 특수검진 대상 183종 유해인자 취급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취급하는 물질에 해당되는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실시

바. 대학 안전관리 현황 정보공시

- 대학 시설 및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 등을 “대학 알리미”에 공시

## 5. 추진계획

가.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의 확산

-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3 ~6월 |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     |
| 9~12월 |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     |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계획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5월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 11월 |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 나. 정기·자체점검 강화 및 일상안전점검 정착 유도

##### ○ 일상안전점검 정착 유도 계획

- 일상안전점검시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상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 함

#### 다.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실시

##### ○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실시 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3월~4월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대상 조사     |     |
| 6월~7월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정부지원금 신청 |     |
| 9월~12월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사업 실시     |     |

#### 라.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상해보험 가입

#####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계획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11월 | 보험가입대상 연구활동종사자 조사 |     |
| 12월 |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     |

#### 마. 유해·위험물 취급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 ○ 유해·위험물질 취급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1월  |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     |
| 7월  |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     |

바. 연구활동 종사자 건강검진(일반·특수)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일반·특수) 실시계획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3월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 선정 |     |
| 4월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     |
| 9월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 선정 |     |
| 10월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     |

사. 대학 안전관리 현황 정보공시

○ 대학 시설 및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 등을 “대학 알리미”에  
공지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8월  | 대학 시설 및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br>자료 제출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
| 10월 | 대학 알리미 공지                                |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 ○ 행사 계획

| 일 자     | 구 분                 | 주관부서  |
|---------|---------------------|-------|
| 06월 04일 | 교육시설물 안전 대비 안전점검의 날 | 시설관리팀 |
| 10월 04일 | 교육시설물 안전 대비 안전점검의 날 | 시설관리팀 |
| 12월 04일 | 교육시설물 안전 대비 안전점검의 날 | 시설관리팀 |

##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예방점검 >

### 1. 행사개요

가. 일 시 : 2024년 6월 4일

나. 참석 대상 : 교직원 및 학생

### 2. 주요 행사 내용

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취약지역 안점점검

나. 여름철 교육 시설 재난관리 대비 공문 발송 및 결과 사항 통보

- 각종 여름철 재난 (태풍·호우·강풍)으로부터 각 급 학교 및 교육 지원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비/대응활동

### 3. 기대 효과

가.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내 풍수해 취약지역을 함께 점검해 봄으로써 위험취약지역을 인식하고 개선활동 실시

나. 여름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 < 건축물 정기점검 및 자체안전점검 >

### 1. 행사개요

가. 일 시 : 2024년 10월 4일

나. 참석 대상 : 교직원 및 학생

### 2. 주요 행사 내용

가. 교내 전 건물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안전점검

나. 자체 안전점검 취지 및 내용소개

다. 교육자료 공문 발송 및 결과사항 통보

### 3. 기대 효과

가. 학교 내 전 건물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안전사항을 점검해 봄으로써 학내 전 구성원들의 건물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나. 건물관리주체인 각 단과대학 행정실이 자체 안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팀에 송부 할 수 있도록 함

##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

### 1. 행사개요

가. 일 시 : 2024년 12월 4일

나. 참석 대상 : 교직원 및 학생

### 2. 주요 행사 내용

가. 화재예방 동영상 자료 시청

나. 화재사고 사례 설명 및 사고 시 대처요령 교육

다. 분말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 훈련

### 3. 기대 효과

가. 화재사고 예방

나. 화재사고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제3장 자연재해 대비 계획

### 1. 개 요

가.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복구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대학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

### 2. 현황 및 실태

가. 자연재해대비 위기대응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하여 담당부서별 업무지정 및 임무습득 한다.

나. 대설 대비 위기대응

- 대설 대비 담당부서별 업무지정 및 임무습득 한다.

| 구 분            | 점 검 내 용             | 담당부서      | 비 고      |
|----------------|---------------------|-----------|----------|
| 풍수해<br>및<br>지진 | 건물옥상 배수구 점검         | 시설관리팀(건축) | 999-5394 |
|                | 붕괴 위험시설 점검          | 시설관리팀(건축) | 999-5394 |
|                | 외부조형물 및 조경수 고정상태 점검 | 시설관리팀(건축) | 999-5394 |
|                | 건물 누수상태 및 시설물 점검    | 시설관리팀(건축) | 999-5394 |
|                | 소방시설 및 비상발전기 점검     | 시설관리팀(전기) | 999-5093 |
|                | 배수펌프 점검             | 시설관리팀(설비) | 999-5124 |
| 대 설            | 제설차량(2대) 운행         | 시설관리팀(건축) | 999-5394 |
|                | 제설작업                | 총무팀       | 999-5820 |

### 3. 주요조치 계획

#### 가. 예방 및 대비 대책

##### ○ 자연재해 대비·대책 마련

-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으로 인명·대학 재산 피해 최소화
-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강화

##### ○ 신속한 응급대책 마련

- 재난관리집행계획에 따른 비상연락망[별지 #1] 참조 구축
- 구성원들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비상 근무요령 숙지 : [별지 #2] 참조

-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체 대응을 위한 표준대응절차 수립과 시설물의 응급복구체제 확립

##### ○ 재난취약시설 특별관리

- 상습침수, 노후시설, 붕괴 위험 등이 있는 시설은 특별관리

※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 ○ 방재 물자 비축 관리 및 재해 대책비 확보

- 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해대책비(비축물자비, 유지보수비 등) 우선확보 조치

##### ○ 재해예방 훈련 실시

- 가상 풍수해 대비 비상훈련 실시 : 민방위훈련과 연계
- 비상근무체제에 따른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 분야별 업무지정 및 임무습득

## 나. 대응대책

### ○재난보고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재난발생 발견자 및 시설물 관리책임자 → 담당부서(팀장, 부서장)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신고 및 협조 요청) → 교육부(재해대책반, 중앙사고수습본부)
-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 적시 지원 및 대처
- 자연재해 발생 시 교직원 당직근무 실시 명령 발령

### ○학생 안전 보호조치

-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예견 또는 발생 시 기상상황을 감안, 지역실정과 총장의 판단에 따라 학생 보호조치

- 관심단계 : 휴강 조치
- 주의단계 : 휴강 조치 및 위험예상지역 학생 안전시설에 수용
- 경계경보 : 휴강 조치 및 안전시설에 수용
- 심각경보 : 임시휴강 및 휴교 조치

### ※ 위기경보 수준

| 구 분            | 판 단 기 준                                                   | 비 고          |
|----------------|-----------------------------------------------------------|--------------|
| 관심<br>(Blue)   |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상태 | • 징후 감시활동    |
| 주의<br>(Yellow) | •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 • 협조체제 가동    |
| 경계<br>(Orange) | • 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 대비계획 점검    |
| 심각<br>(Red)    | •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하여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 응급구조 · 수습대책 추진

- 재난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긴급구조통제단 등에 구조요청
- 인근병원 응급의료 인력 지원 요청

다. 복구대책

○ 시설 및 인력지원

- 유희 대학시설을 이용 이재민 수용소 설치 · 운용
- 피해 발생정도에 따라 복구 인력 지원

○ 재난피해 배상(보상) 대책 수립

- 피해상황에 따른 신속한 보상체계 구축
  - ※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재난 발생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을 기초로 하여 재난피해 배상(보상)액 확정
- 피해자 대표와 보상 협의 추진
  - ※ 피해자 대표와 배상(보상)액, 배상(보상)절차, 배상(보상)기한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협의
  - ※ 배상(보상)금 지급 · 정산 : 책임자를 규명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신속한 복구의사 결정 및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총장은 소관시설 · 업무에서 재난발생시 피해원인 등을 조사 · 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 · 예방대책과 소관시설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 · 시행

- 피해시설 복구·정비 소요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 ※ 관련보험 가입(교육시설재난공제회)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

#### 4. 추진일정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재난취약시설 특별점검 |      |    |    |    |    |    |    |    |    |     |     |     |
| 방재 물자 점검    |      |    |    |    |    |    |    |    |    |     |     |     |
| 재해예방 훈련 실시  |      |    |    |    |    |    |    |    |    |     |     |     |

[별지 #1]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 부 서 명            | 상 황 실        |              | 비 고  |
|------------------|--------------|--------------|------|
|                  | 전 화 번 호      | F A X        |      |
| 총 무 팀            | 051)999-5220 | 051)999-5800 |      |
| 시설관리팀            | 051)999-5094 | 051)999-5113 |      |
| 학생지원팀            | 051)999-5227 | 051)999-5655 |      |
| 학생지원팀<br>(의료지원실) | 051)999-5326 | 051)999-5655 |      |
| 어린이집             | 051)999-5159 | 051)999-5160 |      |
| 방호상황실(에스원)       | 051)999-5384 |              | 외주업체 |
| 전자정보팀            | 051)999-5770 | 051)999-5073 |      |

##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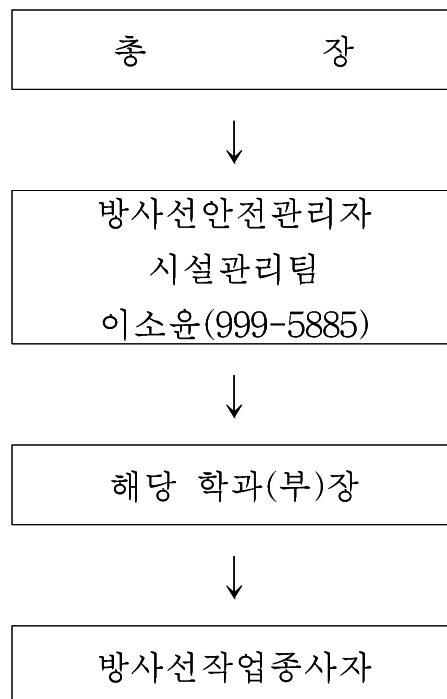
| 구 분               | 임 무 및 근 무 요 령                                                                                                                                                                                                                                                                                                                                                                                                                                                                                      |
|-------------------|----------------------------------------------------------------------------------------------------------------------------------------------------------------------------------------------------------------------------------------------------------------------------------------------------------------------------------------------------------------------------------------------------------------------------------------------------------------------------------------------------|
| 1단계<br>(주의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양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근무내용과 연계하여 관련 부서(팀장)에 기상특보 통보</li> <li>상황근무 및 사전재해 예방조치 지시, 확인 및 대처요령 전파·지시</li> </ul>                                                                                                                                                                                                                                                                                                                                                        |
| 2·3단계<br>(경계·심각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상황 파악 집계 및 보고서 작성</li> <li>긴급대처요령 및 응급복구 방법 지시</li> <li>기타 재해상황 전반을 관리</li> </ul>                                                                                                                                                                                                                                                                                                                                                                         |
| 공통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체계 : 담당자 → 팀장 → 처장 → (부총장) → 총장<br/>※ 긴급상황시 : 담당자 → 총장, 처장, 팀장에게 즉시 보고</li> <li>근무지 : 해당부서 사무실</li> <li>비상근무체제로 변경 시 전일 근무조의 다음 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li> <li>근무교대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일 : 08:3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li> <li>- 휴일 : 09:00~18:00,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li> <li>※ 08:0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근무자 전원 합동근무 실시</li> </ul> </li> <li>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인수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근무 중 변화되는 상황을 즉시 파악·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li> </ul> |

## 1. 개 요

가. 최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는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방사선의 응용에 있어서도 학술분야 연구를 비롯 각종산업에 있어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이에 부응하는 방사선의 안전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 본 대학은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취급전문인을 양성에 힘쓸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2. 재난관리체계 (조직도)





### 3. 현황 및 실태

가. 방사선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하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불의의 방사선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매뉴얼 마련

| 목 적               | 장 소                    |
|-------------------|------------------------|
| 밀봉방사성동위원소<br>사용장소 | 토양분석센터 (공학관 307호)      |
| 방사선발생장치<br>사용장소   | X선회절분석실 (공학관 901-2호)   |
|                   | X선회절분석실 (공학관 806-1호)   |
|                   | 구강방사선 실습실 (의생명2관 202호) |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 4. 주요내용

가. 방사선 관리구역 안전관리

- 방사선발생장치 일일점검
- 방사선측정기 검·교정
- RG 및 X선 회절분석장치 방사선량률 측정
- 방사선발생장치 관리현황보고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실시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 개인피폭방사선량측정 용역 재계약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 5. 추진 일정

### 가. 방사선 관리구역 안전관리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일일점검           |      |    |    |    |    |    |    |    |    |     |     |     |
| 방사선측정기 검·교정    |      |    |    |    |    |    |    |    |    |     |     |     |
| 방사선량률 측정       |      |    |    |    |    |    |    |    |    |     |     |     |
| 방사선발생장치 관리현황보고 |      |    |    |    |    |    |    |    |    |     |     |     |

###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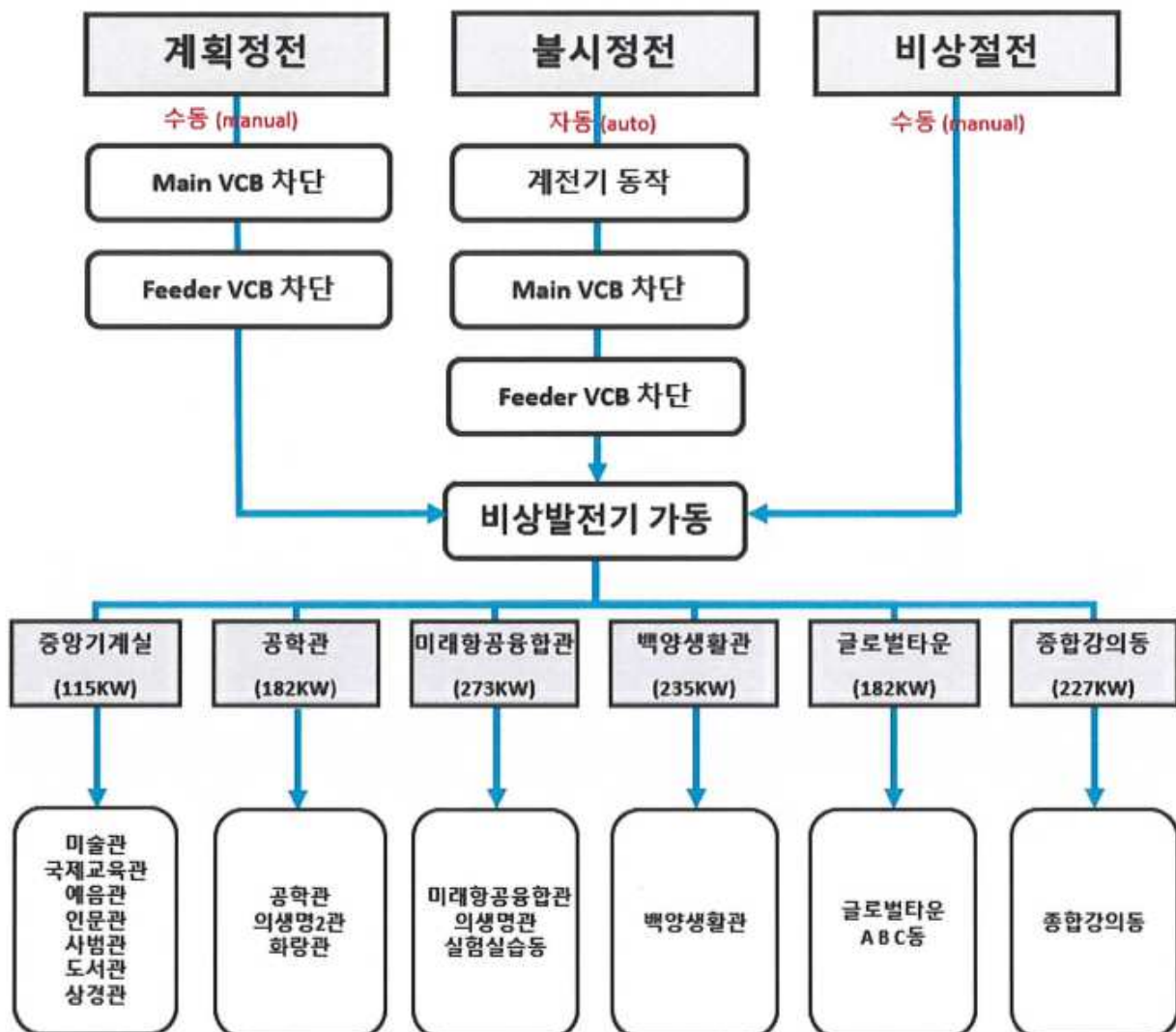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추진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      |    |    |    |    |    |    |    |    |     |     |     |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      |    |    |    |    |    |    |    |    |     |     |     |
| 개인피폭방사선량측정 용역재계약 |      |    |    |    |    |    |    |    |    |     |     |     |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      |    |    |    |    |    |    |    |    |     |     |     |

## 제5장 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계획

### 1. 개 요

국가 전력공급 예비력 부족에 따른 불시 정전 및 한전 전력계통의 천재지변에 의한 각종 사고, 자체 수·변전설비의 노후 및 개·보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여 우리대학교의 자체 정전대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상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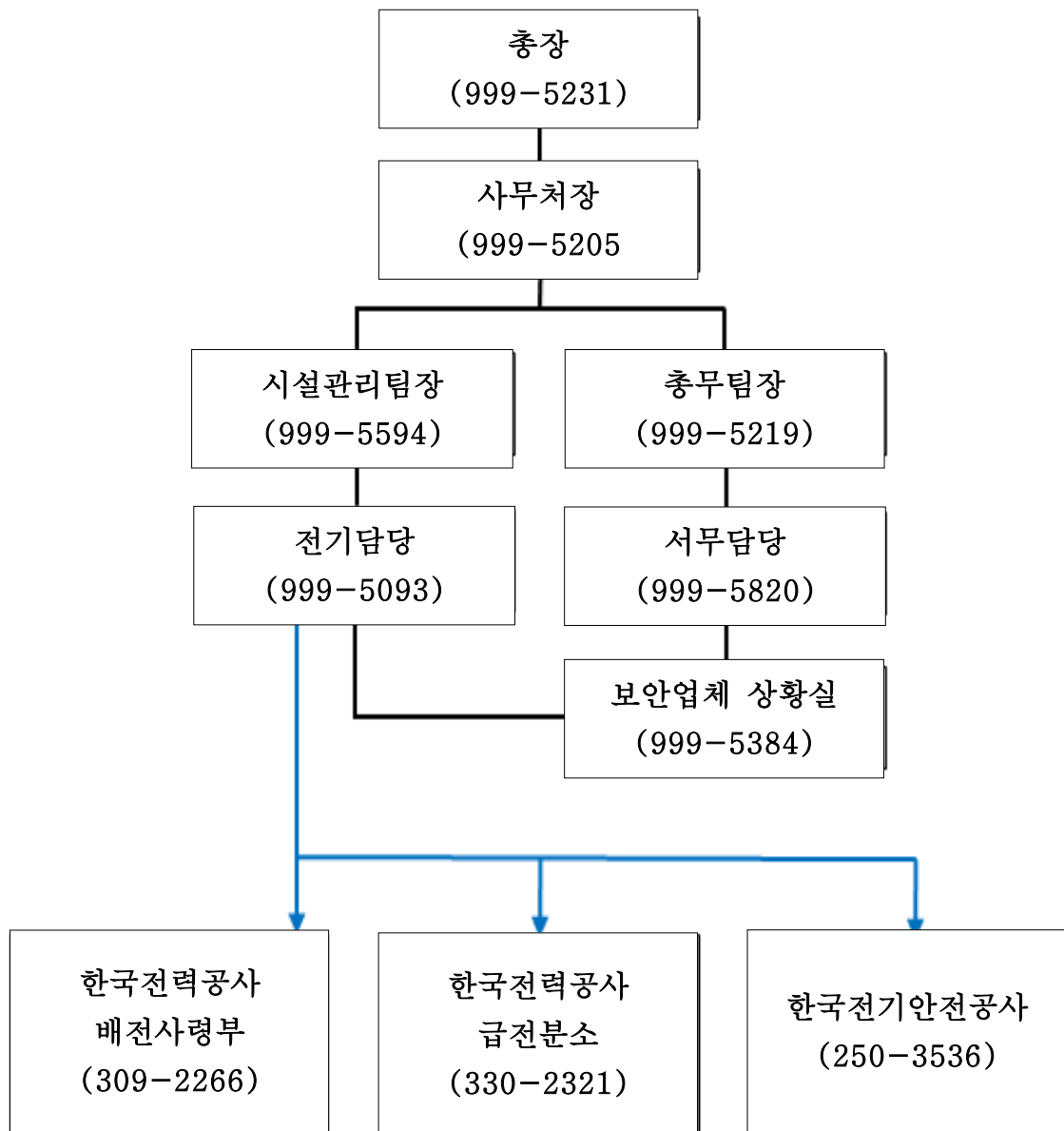
### 2. 정전 발생시 흐름도



### 3. 비상발전기 시설현황

| 설치장소 | 중앙기계실      | 공 학 관 | 미래항공<br>융합관 | 백양생활관 | 글로벌타운 | 종합강의동 |
|------|------------|-------|-------------|-------|-------|-------|
| 용 량  | 115kW      | 182kW | 273kW       | 235kW | 182kW | 227kW |
| 합 계  | 6대, 1214kW |       |             |       |       |       |

### 4. 비상연락체계도



## 5. 주요내용

### 가. 비상발전기 용도

-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 공급
- 소방펌프, 승강기, 비상전원

### 나. 상황에 따른 업무체계

- 불시정전 발생시
  - 캡스 상황실에서 정전 여부를 전기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전기 담당자는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발전기의 가동을 확인 후 비상전원의 정상 공급을 확인한다.  
(자동으로 가동 실패시 수동으로 가동할 것)
  - 승강기에 갇힌 인원이 없는 지 인터폰 및 자동통화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령부 또는 급전분소에 정전 및 복전 등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한다.
- 계획정전 발생시
  - 계획정전은 수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시행하며, 비상발전기는 가동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비상전원의 공급이 필요할 때에는 비상발전기를 수동운전으로 가동한다.

○ 비상절전 발생시

- 냉난방부하를 우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에너지 비상수급에 동참한다.
- 설치 사용중인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 공급하여 피크 부하 절감 및 전력사용량 절감에 참여한다.
- 부하의 긴급절약이 필요할 시에는 비상발전기를 수동 가동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 제 6장

## 학교 감염병 대비 계획

### ① 감염병 확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 □ 관련법규

가.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8685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454호)

나. 관련법령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3) 보건의료기본법
- (4) 검역법
- (5) 의료법
- (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다. 학교 등 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지침

- (1) 학교보건법
- (2) 유아교육법
- (3) 초·중등교육법
- (4) 고등교육법
- (5) 평생교육법
- (6)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 □ 위험요인

- 학교 내 감염 병 발생 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 높음
-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저해 할 위험성
- 대학 은 규모나 조직의 차이가 크며, 자율성이 강하고, 수업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 관리 어려워 확산 위험성
-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 발생 및 학습격차 심화

## □ 용어정리

| 용 어        | 정 의                                                                                                                                                                                                                                                                 |
|------------|---------------------------------------------------------------------------------------------------------------------------------------------------------------------------------------------------------------------------------------------------------------------|
| 위기경보 수준    | ①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br>② 주의(Yellow):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br>③ 경계(Orange):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br>④ 심각(Red):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
| 감염         | 감염병의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함                                                                                                                                                                                                                           |
| 신종·재출현 감염병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과거에 사라졌다가 다시 발생한 감염병                                                                                                                                                                                                                          |
| 해외 유입 감염병  |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
| 인수공통 감염병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 감염병 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 감염병 의사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 병원체 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 감염병 의심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



| 용 어  | 정 의                                                                                                                                                          |
|------|--------------------------------------------------------------------------------------------------------------------------------------------------------------|
|      | <p>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p> <p>나. 「검역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p> <p>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p>   |
| 환자격리 |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을 일정기간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
| 역학조사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

## □ 개요

- 가. 학교 전염병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대학 자체 대응 계획수립 및 전염병 대비 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처 능력제고
- 나. 전염병예방 보건교육 및 면역증강, 환경위생 개선 등으로 사전예방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증진 도모

## □ 위기 대응

### 가. 대응개념

- 1) 목표 :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차단
- 2) 대응방향
  - 학교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 유지
  - 교육기관 내 확진자, 의심증상자 등 현황 파악
  - 학생 및 교직원 대상의 감염병 예방교육 철저 강조
  - 학생 및 교직원 참여 집단 활동 자제

### 나. 대응지침

- 1) 감염병 재난에 대한 지자체 대응 체계 강화
- 2) 교육기관 방역 인프라 구축 및 점검

- 3)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동 조치
- 4) 학생·교직원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최소화

#### 다. 판단·고려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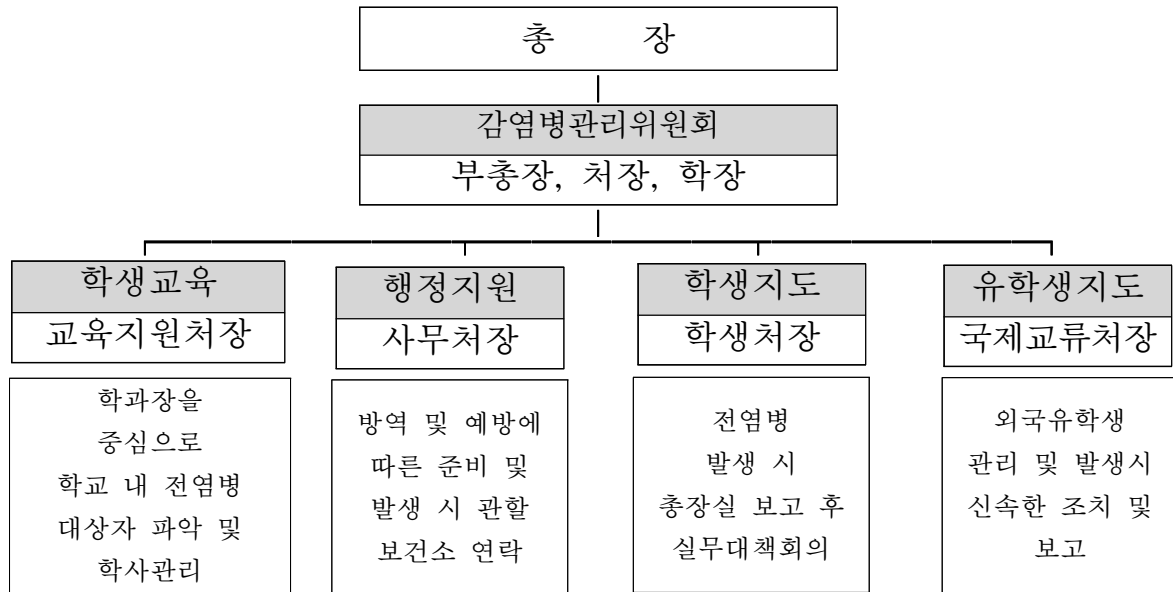
- 1) 감염병 확진 이 전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등 판단 필요
- 2) 해외체류 우리국민 또는 유학생 등에 국내 유입 가능성 상존

### □ 주요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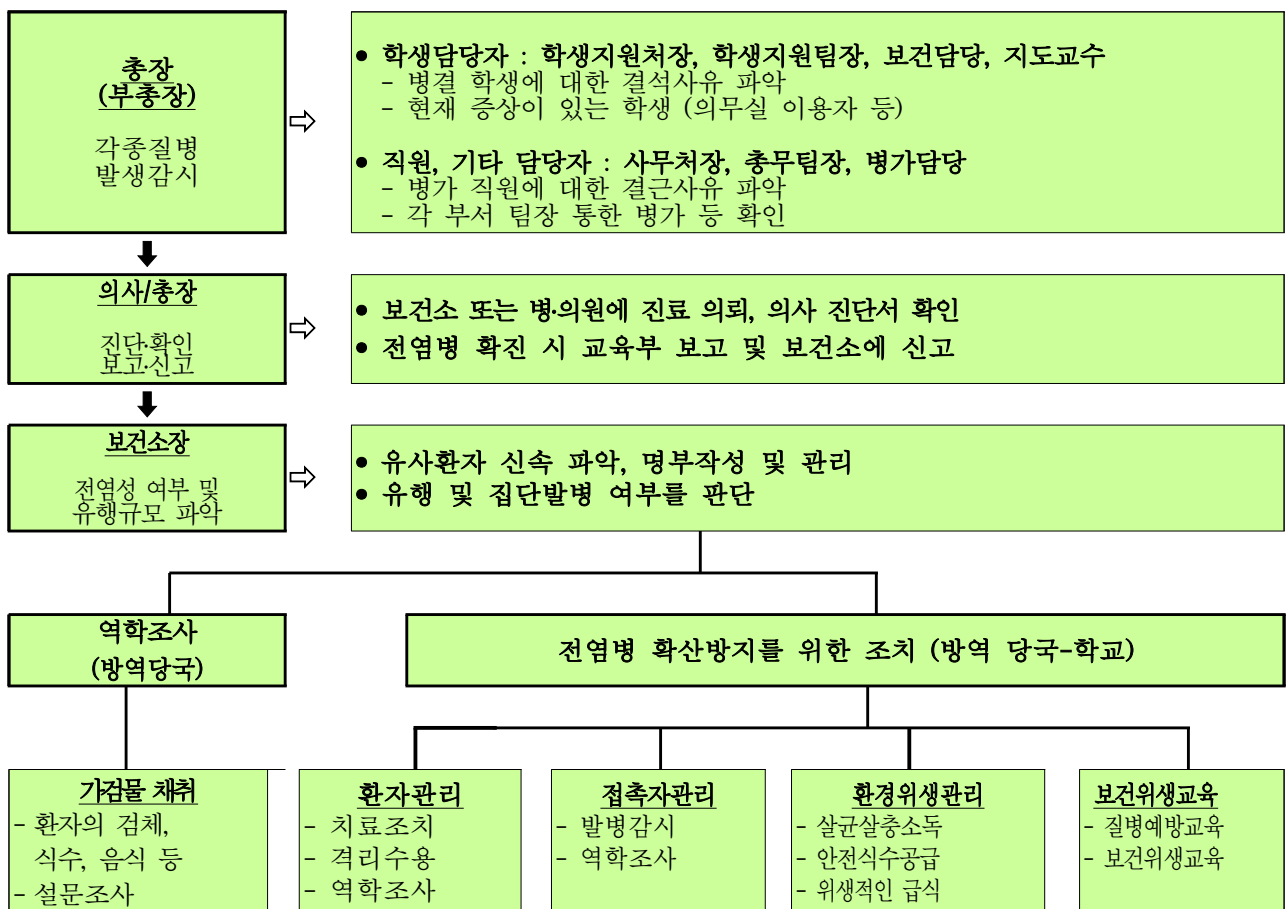
#### 가.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관리대책의 홍보 및 교육

- 1) 학생 및 교직원의 해외 출입국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출국 전 예방접종 의무화 및 입국 후 감염병 감염 여부 체크 의무화
- 2)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에 관한 사전 교육 실시
- 3) 감염병 매개 집단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교내 식당의 정기 점검을 실시
- 4) 학생단체생활 공간(생활관, 정진관, 강의실, 체육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결핵, 간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보건자 수시 확인 및 건강검진 실시
- 5)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관련 정보 학과공문,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적극 강화
- 6) 감염병 예방접종 홍보 및 운용
- 7) 1일 8회 30초간 손씻기(1830) 운동 전개

## □ 비상조직체계



## □ 평상 시 학교 감염 병 대응 체계



## □ 감염병 유행 시 단계별 조치사항

| 구분 | 판단 기준                                                                                                                                                                    | 주요 조치사항                                                                                                                                                                                                                                               |
|----|--------------------------------------------------------------------------------------------------------------------------------------------------------------------------|-------------------------------------------------------------------------------------------------------------------------------------------------------------------------------------------------------------------------------------------------------|
| 관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의 신종 전염병 발생</li> <li>•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li> <li>•태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정보 수집·전파</li> <li>•대책위원회 업무분담 점검 및 업무담당자 교육</li> <li>•대응태세 점검</li> <li>•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li> </ul>                                                                                                   |
| 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li> <li>•국내에서 신종 전염병 발생</li> <li>•지역별 재출현 전염병 발생</li> <li>•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전염병 발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li> <li>•전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지킴시달</li> <li>•전염병 확산정보 전파 및 예방활동 강화</li> <li>•환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li> <li>•2차 감염 우려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li> <li>•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li> <li>•학교 내 행사, 특강 등 단체 활동 자제</li> </ul> |
| 경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li> <li>•국내 신종 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li> <li>•재출현 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li> <li>•수인성 전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협조체계 강화</li> <li>•전염병 예방 및 감시강화 지킴 일제 시달</li> <li>•환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li> <li>•감염 의심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li> <li>•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li> <li>•학생단체행사 및 단체 활동 금지</li> </ul>                              |
| 심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신종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li> <li>•국내 신종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li> <li>•재출현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li> <li>•수인성 전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 합동대응, 대국민담화 발표 등</li> <li>•전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정보전파</li> <li>•환자 및 유증상자 치료기관 이송</li> <li>•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li> <li>•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li> <li>•각종 단체활동 일제 금지</li> <li>•방역기관 등 협의하에 휴교/휴업 결정</li> </ul>  |

## □ 학교 감염병 상황별 조치사항

| <국내 미유입>                                                                                                                                            | <국내유입/<br>학교 내 환자발생 없음>                                                                                                                                                                                                                                           | <학교 내 환자발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 여행 학생·교직원 대상 교육 강화</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교육 집중 실시</li> <li>- 해외 감염병 발생지역 여행 학생·교직원 관리</li> <li>- 국내 감염병 발생상황 모니터링</li> <li>- 방역물품 등 사전 점검 및 확보</li> <li>- (지역 내 환자 발생시) 발열 검사 실시 검토</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산방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현황 등 일일 상황보고</li> <li>- 확진(의심)환자 건강 상황 일일 모니터링</li> <li>- 밀접접촉자 관리</li> <li>- 추가환자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발열검사</li> <li>- 학생 교육 및 심리지원</li> <li>- 교내 특별소독</li> <li>- 휴업 검토(교육청, 보건소 협의)</li> </ul> </li> </ul> |

## □ 부서별 임무와 역할

| 구분                  | 보직                   | 직위                                                                                                                            | 비고                          |
|---------------------|----------------------|-------------------------------------------------------------------------------------------------------------------------------|-----------------------------|
| 일상회복<br>지원단         | 감염병관리위원장             | 부총장                                                                                                                           | 최고의사결정<br>기구                |
|                     | 감염병관리위원회             | 사무처장, 교육지원처장,<br>학생지원처장, 재무처장,<br>기획조정처장, 입학관리처장,<br>국제교류처장, 대학원장,<br>인재개발처장, 대외협력실장,<br>도서관장, 생활관장,<br>학생위원<br>2명(총학생회장·부회장) |                             |
| 일상회복<br>지원단<br>관리조직 | 감염병 총괄관리자            | 사무처장                                                                                                                          | 부 학생지원처장                    |
|                     | 감염병 발생 감시 담당자        | 학생지원팀장                                                                                                                        | (의료지원실 5326)<br>지원          |
|                     | 발생감시 관리자(대학)         | 단과대학장                                                                                                                         |                             |
|                     | 발생감시 관리자(대학원)        | 대학원장                                                                                                                          | 대학원 교학팀장                    |
|                     | 발생감시 관리자(교원)         | 교육지원처장                                                                                                                        |                             |
|                     | 발생감시 관리자(교직원)        | 총무팀장                                                                                                                          |                             |
|                     | 발생감시 관리자<br>(외국인 학생) | 국제교류팀장                                                                                                                        |                             |
|                     | 발생감시 관리자<br>(내국인 학생) | 학생지원팀                                                                                                                         |                             |
|                     | 발생감시<br>관리자(기숙사생)    | 생활관 행정팀장                                                                                                                      |                             |
|                     | 발생감시 관리자             | 학사지원팀장                                                                                                                        |                             |
|                     | 발생감시 관리자             | 취창업지원팀장                                                                                                                       |                             |
|                     | 발생감시 관리자             | 입학관리팀장                                                                                                                        |                             |
|                     | 발생감시 관리자             | 학술정보팀장                                                                                                                        |                             |
|                     | 모니터링 요원              | 각 학과(부), 대학원<br>전체 부서 행정담당자<br>각 단대회장단                                                                                        | (총학생회장,<br>동아리연합회<br>회장 지원) |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 발생규모            | 이동 경로       |   |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
|-----------------|-------------|---|-----------------------------------------------------------------------------|
| 1명 발생<br>(방문포함) | ■ 이동 경로 명확  | ⇒ |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
|                 | ■ 이동 경로 불명확 |   |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
| 복수 발생<br>(방문포함) | ■ 이동 경로 명확  | ⇒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br>※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                 | ■ 이동 경로 불명확 | ⇒ |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br><br>■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감염병 행동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 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감염병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감염병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감염병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감염병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 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참고 : 보건소 이동 방법 〉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준수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감염병 전파 의심 증상(특히 호흡기계열 감염병) 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감염병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법정감염병 임상증상 발생 시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쉽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감염병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감염병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감염병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환자와 접촉한(또는 접촉이 예상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자가 격리 권고
- 전담 관리인지정 하고, 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일시적 이용제한 시설에 대한 소독 방법 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 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 진료·검사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 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 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관련 매뉴얼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 참고 자료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증상발생 접촉자 범위 설정

※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주로 호흡기계열 감염 병의 경우 2일전부터 접촉자 조사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참고

## □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전염병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지원실 운영             |  |  |  |  |  |  |  |  |  |  |  |  |
| 전염병 발생 시<br>대책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예방접종 안내              |  |  |  |  |  |  |  |  |  |  |  |  |
| 방역소독 실시<br>(시설관리팀)   |  |  |  |  |  |  |  |  |  |  |  |  |
| 홈페이지 홍보              |  |  |  |  |  |  |  |  |  |  |  |  |

\*시설소독의 경우 시설관리팀 협조

- 총5회 실시 (1~3월, 4~5월, 6~7월, 8~9월, 10월~12월)

## □ 예 산

(천원)

| 분 야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학교 전염병<br>대비 | 2,000 | 0     | 코로나<br>혁신예산 | 코로나<br>혁신예산 | 코로나<br>혁신예산 | 0     | 0     |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학혁신지원팀 23.2 자료기준)

| 대책명                                  | 연도별 예산집행 및 2023년 계획 |            |            |      |            | 비고 |
|--------------------------------------|---------------------|------------|------------|------|------------|----|
|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br>예산 |    |
| 대학혁신지원사업<br>코로나19 방역<br>(소독 및 물품구입비) | 126,390,280         | 88,694,910 | 32,560,700 | 0    | 0          |    |
| 대학혁신지원사업<br>코로나19 인건비                | 31,208,900          | 22,016,670 | 7,213,710  | 0    | 0          |    |
| 계                                    | 157,599,180         | 90,886,580 | 39,797,710 | 0    | 0          |    |

□ **유관기관 연락처**

| 사상구청         | 사상구 보건소      | 사상구 보건소      | 북부소방서        | 선별진료소        |
|--------------|--------------|--------------|--------------|--------------|
| 안전총괄과        | 감염예방과        | 자가격리관리       |              | 좋은삼선병원       |
| 051-310-4635 | 051-310-4822 | 051-310-4918 | 051-302-0119 | 051-922-5998 |

□ **대학관련 방역지침 공유 방법**

- 1)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사공지
- 2) 신라대학교 포털 → 게시판
- 3) 교직원/재학생 카카오톡 SMS 발송

## 1. 개 요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생, 교직원  
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대학 운영 도모

## 2. 현황 및 실태

- 최근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음
-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는 농도가 높고 유독성 화합물과 중금속  
등이 다량검출되고 있어 호흡기 질환과 혈관계 질환을 유발하  
는 등 건강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기상청의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발령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단계  
별 조치계획에 따라 학생수업과 학생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황  
사,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3. 주요사업(내용)

가.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발생 대응 및 사전 교육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 사전 교육  
철저
- 학생, 교직원에게 발령단계별 조치사항 및 황사, 미세먼지,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 안내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 발생시 SMS문자 및 대학 홈페이지  
를 활용하여 황사, 미세먼지 발생 및 폭염발생과 학생에 대한  
조치 상황 신속 전달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 발생 시 재난의 정도에 따른 행동수칙과 피해예방 방안을 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나. 황사, 미세먼지 피해예방 단계별·특보발령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

※ 황사 특보기준 강화(07.2) : 황사주의보( $500 \rightarrow 400 \mu\text{g}/\text{m}^3$ ), 황사경보( $1,000 \rightarrow 800 \mu\text{g}/\text{m}^3$ )

- 특보발령 시 호흡보호구 착용, 손씻기 운동 및 지도 강화
  - 외출 시 마스크,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 체계 유지
  - 황사 및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의료지원팀 및 교내 비치
  - 특보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상태 점검 및 관리
- 다. 폭염 피해예방 단계별·특보발령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
- 폭염 발생 시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및 평소보다 물을 자주 섭취 하도록 안내
  - 건물 별 정수기 비치여부 점검
  - 외출 자제 및 실외 활동 금지
  -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예방 재점검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 체계 유지
  - 폭염특보 종료 후 환자 파악 및 건강 상태 점검 및 관리

#### 4.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예방 교육 |       |    |    |    |    |    |    |    |    |     |     |     |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예방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지원팀 운영                         |  |  |  |  |  |  |  |  |  |  |  |  |
| 황사, 미세먼지 및<br>폭염발생 시<br>대책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5. 고농도 미세먼지 개요

### 1)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 및 (‘나쁨’ 이상)이 발생하거나, 실제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어 국가·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경우

| 구 분    | 요 건                                                                    |
|--------|------------------------------------------------------------------------|
|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24시간 평균농도 $PM_{10}$ $81\mu m/m^3$ 또는 $PM_{2.5}$ $36\mu m/m^3$ 이상 |
| 고농도 발생 | $PM_{10}$ $81\mu m/m^3$ 또는 $PM_{2.5}$ $36\mu m/m^3$ 이상 1시간 지속          |
| 주의보    | $PM_{10}$ $150\mu m/m^3$ 또는 $PM_{2.5}$ $75\mu m/m^3$ 이상 2시간 지속         |
| 경보     | $PM_{10}$ $300\mu m/m^3$ 또는 $PM_{2.5}$ $150\mu m/m^3$ 이상 2시간 지속        |

### 2) 용어정의

| 용 어                  | 정 의                                                                                              |
|----------------------|--------------------------------------------------------------------------------------------------|
| 미세먼지                 |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_{10}$ ( $10\mu m$ 이하)과 $PM_{2.5}$ ( $2.5\mu m$ 이하)로 구분 |
| 고농도 미세먼지<br>예보       | ○ 미세먼지 “나쁨” 이상 예보(17시 기준)<br>※ $PM_{10}$ $81\mu g/m^3$ 이상 또는 $PM_{2.5}$ $36\mu g/m^3$ 이상         |
| 고농도 미세먼지<br>발생       | ○ 미세먼지 1시간 농도 “나쁨” 이상인 경우<br>※ $PM_{10}$ $81\mu g/m^3$ 이상 또는 $PM_{2.5}$ $36\mu g/m^3$ 이상         |
| 미세먼지 대응              | ○ 미세먼지를 사전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환류하기 위해 정부·광역<br>자치단체 등이 기획·집행·통제·보고하는 제반활동                            |
| 주관기관                 |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의 주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공공기관                                                             |
| 유관기관                 | ○ 유형별 미세먼지 관리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br>央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 일선기관                 | ○ 취약계층의 주요 활동공간인 어린이집·각급 학교*·노인요양시설                                                              |
| 예비저감조치<br>(예비비상저감조치) | ○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다음날(내일), 즉 비상저감조치가 예<br>상되는 날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공공부문) |
| 비상저감<br>조치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br>시행,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                        |
| 미세먼지 예보              |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br>알리는 것                                                |

| 용 어      | 정 의                                                                                                 |
|----------|-----------------------------------------------------------------------------------------------------|
| 미세먼지 경보  | ○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것    |
| 경보 발령해제  | ○ 미세먼지 농도가 경보해제기준에 해당하는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가 즉시 경보를 해제<br>○ 주의보의 경우 발령을 해제하고 경보의 경우 주의보로 전환 |
| 미세먼지 담당자 | ○ 학교 또는 기관에서 미세먼지대응을 담당하는 교직원(오존담당자와 동일)<br>(정: 학생지원팀장, 부: 의료지원실 간호사)                               |

## 나.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 1) 미세먼지 예보제

- (목적) 대기질 모델링 및 예보관의 판단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14.2~)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오후 5시, 11시)
- (예보권역) 전국 19개 권역\*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구 분  |                             | 등 급( $\mu\text{g}/\text{m}^3$ ) |         |          |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보물질 | 미세먼지 ( $\text{PM}_{10}$ )   | 0 ~ 30                          | 31 ~ 80 | 81 ~ 150 | 151 이상 |
|      | 초미세먼지 ( $\text{PM}_{2.5}$ ) | 0 ~ 15                          | 16 ~ 35 | 36 ~ 75  | 76 이상  |

\* 미세먼지 예보등급은  $\text{PM}_{10}$ 과  $\text{PM}_{2.5}$  중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됨

- (예보내용)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 2) 예비저감 조치 및 비상저감 조치

- (목적)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시·도별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의 건강 피해 최소화
- (기준)

| 구분                    | 발령 기준                                                                                                                                                                                                                                                                                                                                                                               |
|-----------------------|-------------------------------------------------------------------------------------------------------------------------------------------------------------------------------------------------------------------------------------------------------------------------------------------------------------------------------------------------------------------------------------|
| 예비 저감 조치<br>(D-2일 발령) | ① 당일(D-2일) 17시 예보기준으로 모레(D일) 초미세먼지 “매우나쁨” 이 예측된 경우<br>② 내일(D-1일) · 모레(D일) 모두 초미세먼지( $\text{PM}_{2.5}$ )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
| 비상 저감 조치<br>(D-1일 발령) | ①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 $\text{PM}_{2.5}$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및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text{PM}_{2.5}$ )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br>② 당일(D-1) 주의보(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및 내일(D-day) 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 $\text{PM}_{2.5}$ )가 $50\mu\text{g}/\text{m}^3$ 초과 예상<br>③ 내일(D-day)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text{PM}_{2.5}$ ) $75\mu\text{g}/\text{m}^3$ 초과 예상 |

### 3) 미세먼지 경보제

- (목적)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 보호 및 대기오염 저감 조치 시행('15.1~, 지자체)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70개 권역\*, '18.12월 기준)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 대상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 미세먼지<br>(PM-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
|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초미세먼지<br>(PM-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mu\text{g}/\text{m}^3$ 미만인 때         |
|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6.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가. 사상구 보건소 : 051-310-4793

나. 좋은 삼선병원 : 051-322-0900

다. 부산 보훈병원 : 051-601-6073

라. 부산 백 병 원 : 051-890-6114

## 1. 개 요

가. 학교식당 이용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과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실정에 맞는 감시체계 및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집단발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병 시 신속히 치료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위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 2. 주요사업(내용)

### 가. 일반위생관리

- 개인위생 : 6개월 단위로 건강검진, 손세척/소독, 위생복 착용, 소화기계 증상자 조리금지
- 온도 및 시간관리 : 5 ~ 60℃ 위험온도 구간에 식품이 없도록 관리
- 청소 및 정리정돈 : 시설, 설비, 도구 청소, 조리실, 탈의실, 창고, 사무실 정리

### 나. 검 수

- 배송차량 온도 기록지 확인, 차량내부 청결유지
- 식품, 비식품 분리/구분 배송
- 냉동 -18℃이하, 냉장 0 ~ 10℃
- 식자재는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표시사항과 생산지가 명확한 식품 구입
- 식품의 온도, 선도, 품질, 표시사항, 유통기한 등 확인
- 부적합품 또는 폐기품은 표시하여 별도 표시

#### 다. 전처리

- 절단, 썰기 - 용도별 기자재 구분 사용, 맨손 금지
- 세척, 소독 - 애벌세척시 이물 선별 철저
- 소독액 제조 및 침지 소독 - 농도, 시간 준수
- 행균 -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소독제 사용
- 해동
  - 냉장해동 - 5℃이하 냉장고에서 72시간 이내
  - 유수해동 - 흐르는 찬물에서 2시간 이내
  - 해동시 다른 식재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 라. 조 리

- 가열 - 중심온도 74℃이상(중심온도 정확히 확인)
- 비가열(무치기, 혼합) - 소독된 장갑 사용, 조리용기 및 조리도구 소독
- 냉각 기준 준수(냉방기기, 오랜 상온방치 냉각금지)
  - ※ 60℃이상 -----> 21℃이하 -----> 5℃이하
  - (2시간이내)                      (4시간이내)

#### 마. 검식 및 보존식

- 검식
  - 조리 완료전 검식
  - 검식 전용 용기 및 도구 사용
  - 검식 음식 폐기
- 보존식
  - 조리된 식단을 매회 1인 분량 보관
  - -18℃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
  - 보존식 용기는 건조, 소독된 것 사용

#### 바. 보관 및 배식

- 적온보관 - 찬 음식(5℃이하), 따뜻한 음식(60℃이상)
- 배식
  - 적온보관이 안되는 경우 2~3시간 이내 배식
  - 상온보관시 3시간 이내 배식 완료
  - 새음식과 배식중이던 음식을 섞지 않음

#### 사. 세척 및 소독

- 세척 -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과 식품잔류물 제거
- 소독 -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화학물질로 사멸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인정된 제품 사용
- 세척 후 소독(소독효과를 높임) - 이물 제거 - 세제세척 - 소독
- 식기 세척/소독은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로 인정된 제품 사용
- 식기소독 방법
  - 식기세척기 최종 행굼 온도 82℃ 이상
  - 식기건조기내 식기 표면 온도 71℃ 이상
  - 염소 소독(수 세척시 필수)

### 3. 집단 급식 및 식중독 발생시 대응

- 가. 동일증세로 2인 이상 집단 환자 발생 또는 의심시에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나. 신고 후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환자를 파악, 현장 조사, 가검물 조사
- 다.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참여
- 라. 식단 조리과정 설명을 정확히 기록
- 마.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 파악
- 바. 최근 3일간의 식단표와 거래처 파악 등

사.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후 시설과 기구 등에 대한 살균, 소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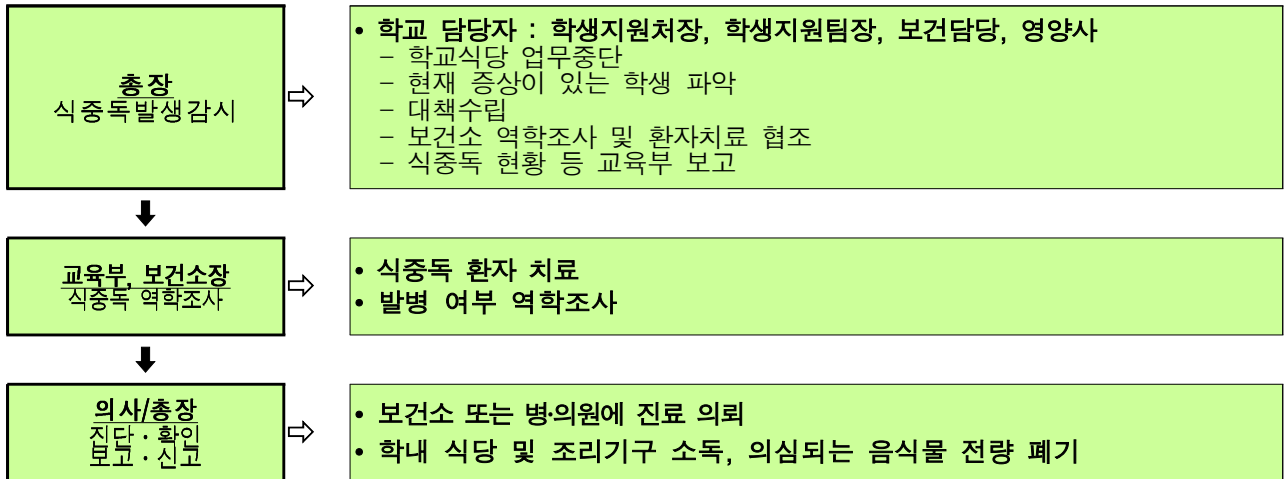
아. 의심되는 원인에 대한 재발 방지조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학교식당 운영을 중지

### [ 식중독 발병의 주요 원인균 ]

| 원인균            | 증상및발병시기                                                | 오염원                                                                        |
|----------------|--------------------------------------------------------|----------------------------------------------------------------------------|
| 노로바이러스         | -오심, 구토, 설사, 복통<br>-24~48시간                            |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br>-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의한 2차 감염<br>-겨울철에 많이 발생            |
| 황색포도상구균        | -구토, 복통, 설사, 오심<br>-1~5시간                              | -사람 또는 동물의 피부, 점막에 널리 분포<br>-화농성 질환자가 취급·준비한 음식물                           |
| 바실러스           | -구토형 : 황색포도상구균<br>식중독과 유사<br>-설사형 : 클로스트리디움<br>식중독과 유사 |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토양, 곡류, 채소<br>류에 존재<br>-구토형 : 볶음밥, 파스타류 등<br>-설사형 : 식육, 스프 등 |
| 살모넬라           | -복통, 설사, 구토, 발열<br>-8~48시간                             | -사람·가축 분변, 곤충 등에 널리 분포<br>-계란, 식육류와 그 가공품<br>-분변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           |
| 병원성대장균<br>O157 | -설사, 복통, 발열, 구토<br>-12~72시간                            | -환자나 동물의 분변에 직·간접적으로<br>오염된 식품<br>-오염된 칼도마 등에 의해 다져진 음식물                   |
| 장염비브리오         | -복통, 설사, 발열, 구토<br>-평균 12시간                            | -여름철 연안에서 채취한 어패류·생선회 등<br>-오염된 어패류를 취급한 칼도마 등 기구류                         |
| 클로스트리디움        | -설사, 복통, 통상적으로<br>가벼운 증상 후 회복됨.<br>-8~12시간             | -동물 분변, 토양 등에 존재<br>-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스프, 국, 카레 등<br>을 방치할 경우                   |

# 학교 식중독 발생시 대응체계

## □ 평상시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 □ 학교식중독 발생확산시 단계별 조치사항

| 구분    | 관 심 (Blue)                                                                                        | 주 의 (Yellow)                                                                                      |
|-------|---------------------------------------------------------------------------------------------------|---------------------------------------------------------------------------------------------------|
| 판단 기준 | • 식중독지수 : 10~34<br>•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br>•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                            | • 식중독지수 : 35~50<br>•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보도<br>•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br>• 일부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
| 조치 사항 | ▶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육부/교육청)<br>▶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학교)                                            |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육부/교육청)<br>▶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학교)                                                  |
| 구분    | 경 계 (Orange)                                                                                      | 심 각 (Red)                                                                                         |
| 판단 기준 | • 식중독지수 : 51~85<br>•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br>•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이상 발생<br>•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 • 식중독지수 : 85이상<br>• 집단급식소에서 100명이상 식중독 발생<br>• 단위학교 학생의 30%이상 설사환자 발생<br>•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
| 조치 사항 | ▶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육부/교육청)<br>▶ 체험학습 억제, 급식중단, 대책반 운영(학교)                                            | ▶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육부/교육청)<br>▶ 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학교)                                         |

#### 4.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위생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당 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지원팀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중독 발생시<br>대책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당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가. 사상구 보건소 : 051-310-4793

나. 좋은 삼선병원 : 051-322-0900

다. 부산 보훈병원 : 051-601-6073

라. 부산 백 병 원 : 051-890-6114

## **I. 학교폭력**

### **1. 개 요**

가.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즐거운 학교 풍토 조성

### **2. 주요사업(내용)**

가. 대학교 내 학교폭력 상담소(학생상담센터 내) 설치

나. 대학교 홈페이지 학교폭력 고충상담소 홈페이지 설치

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위원회설치

라. 대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마.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신입생 OT, 특강, 온라인 교육 등

바. 학교폭력 고충상담소 홈페이지 교육자료 게재 등

### **3. 학교폭력 사건 대응체계**

가. 학교폭력 상담소(홈페이지, 학생지원처 등)를 통해 신고를 받고 즉시 상담에 응함

나.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다. 상담소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라. 상담소장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한다.
- 바. 위원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사.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관련부서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한다.
- 아. 위원회의 조치사항
  - 가해자의 공개 사과
  - 가해자의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 요구
  - 피해자에게 민·형사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에 가중한 징계의 요구나 발의

#### 4.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총장이 추천하는 교수 2인,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하되 학생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5. 사안처리시 유의사항

-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하지 않도록 한다.
-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석에 의한 의견진술이 어려울 경우 서면진술 가능)
- ▶ 사안조사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 단, 관련학생 및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 ※ 회의록 작성 시 녹취를 한 후 회의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추후 민원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 ▶ 자치위원회 개최 시,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과거의 학생의 교내외 생활전반을 포함하여 필요이상의 가중조치를 부여하여 민원 발생)
-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 6.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학교폭력<br>예방교육  |       |    |    |    |    |    |    |    |    |     |     |     |
| 상담실 운영        |       |    |    |    |    |    |    |    |    |     |     |     |
| 사건처리 운영       |       |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학교폭력<br>예방 홍보 |       |    |    |    |    |    |    |    |    |     |     |     |

## 참고

### 학교폭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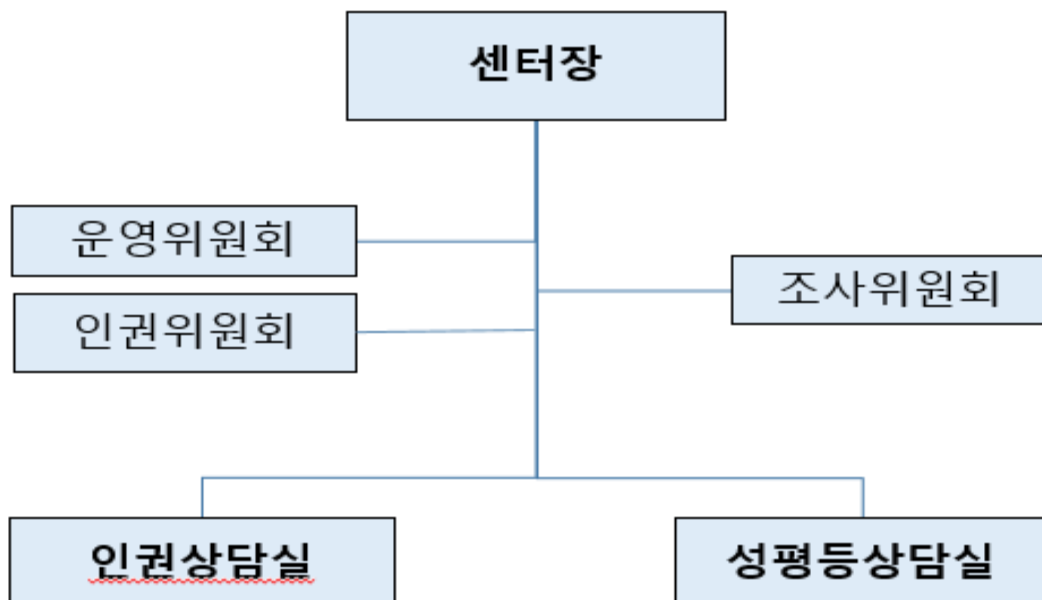
| 유형            | 학교폭력예방법<br>관련                                                   | 예시 상황                                                                                                                                                                                                                                                                                                                                                                                                 |
|---------------|-----------------------------------------------------------------|-------------------------------------------------------------------------------------------------------------------------------------------------------------------------------------------------------------------------------------------------------------------------------------------------------------------------------------------------------------------------------------------------------|
| 신체<br>폭력      | •상해<br>•폭행<br>•감금<br>•악취 · 유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li> <li>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li> <li>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악취)</li> <li>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li> <li>-장난을 빙자해서 고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방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li> </ul>                                                                                                          |
| 언어<br>폭력      | •명예훼손<br>•모욕<br>•협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li> <li>-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li> <li>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li> <li>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li> </ul>                                      |
| 금품<br>갈취      | •공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li> <li>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li> <li>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li> <li>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li> </ul>                                                                                                                                                                                                                                    |
| 강요            | •강제적심부름<br>•강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속칭 빵 서틀, 와이파이 서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li> <li>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li> <li>-폭행을 할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는다고 협박하는 경우</li> </ul>                                                                                                                                                  |
| 따돌<br>림       | •따돌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따돌림)</li> <li>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li> </ul>                                                                                                                                                                      |
| 성<br>폭력       | •강간<br>•강제추행<br>•성희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행 · 협박등 강제력을 동원한 성행위(강간)</li> <li>폭행 ·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유사강간)</li> <li>폭행,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 등을 하는 행위(강제추행)</li> <li>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성희롱) 등</li> </ul>                                                                                                                                  |
| 사이<br>버<br>폭력 | •사이버 따돌림<br>•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사이버 따돌림)</li> <li>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li> <li>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li> <li>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li> </ul> |

## II. 성폭력 예방 대책

### 1. 개 요

- 가. 2022.3.24.부터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 2021.3.23.) 됨에 따라 설치·운영 기준에 맞춰 신라대학교 내 인권센터 설립
- 나.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도모
- 다.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대학 문화 속에서 공동체 구현

### 2. 조직도



### 3. 사업내용

| 구분 | 사업내용                              |        | 비고     |
|----|-----------------------------------|--------|--------|
| 상담 | 인권상담 및 사건처리<br>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처리 |        | 상시     |
| 조사 | 인권·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        | 연 1회   |
| 교육 | 인권교육                              | 온·오프라인 | 기획·상시  |
|    | 폭력예방교육                            | 온·오프라인 |        |
|    | 인권·성평등 교육                         | 온·오프라인 |        |
|    |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가해자 2차가해 방지프로그램       |        | 사건 시   |
| 홍보 | 인권·성인식 개선 캠페인                     |        | 연 1~2회 |

### 4. 위원회 구성

| 분류    | 인원           | 담당업무                                                   |
|-------|--------------|--------------------------------------------------------|
| 운영위원회 | 시행령 반영<br>구성 | 인권센터가 독립,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주요<br>업무를 심의, 의결-계획, 인사, 결산 등 |
| 인권위원회 | 시행령 반영<br>구성 |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의결                                        |
| 조사위원회 | 시행령 반영<br>구성 | 인권침해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구성, 사건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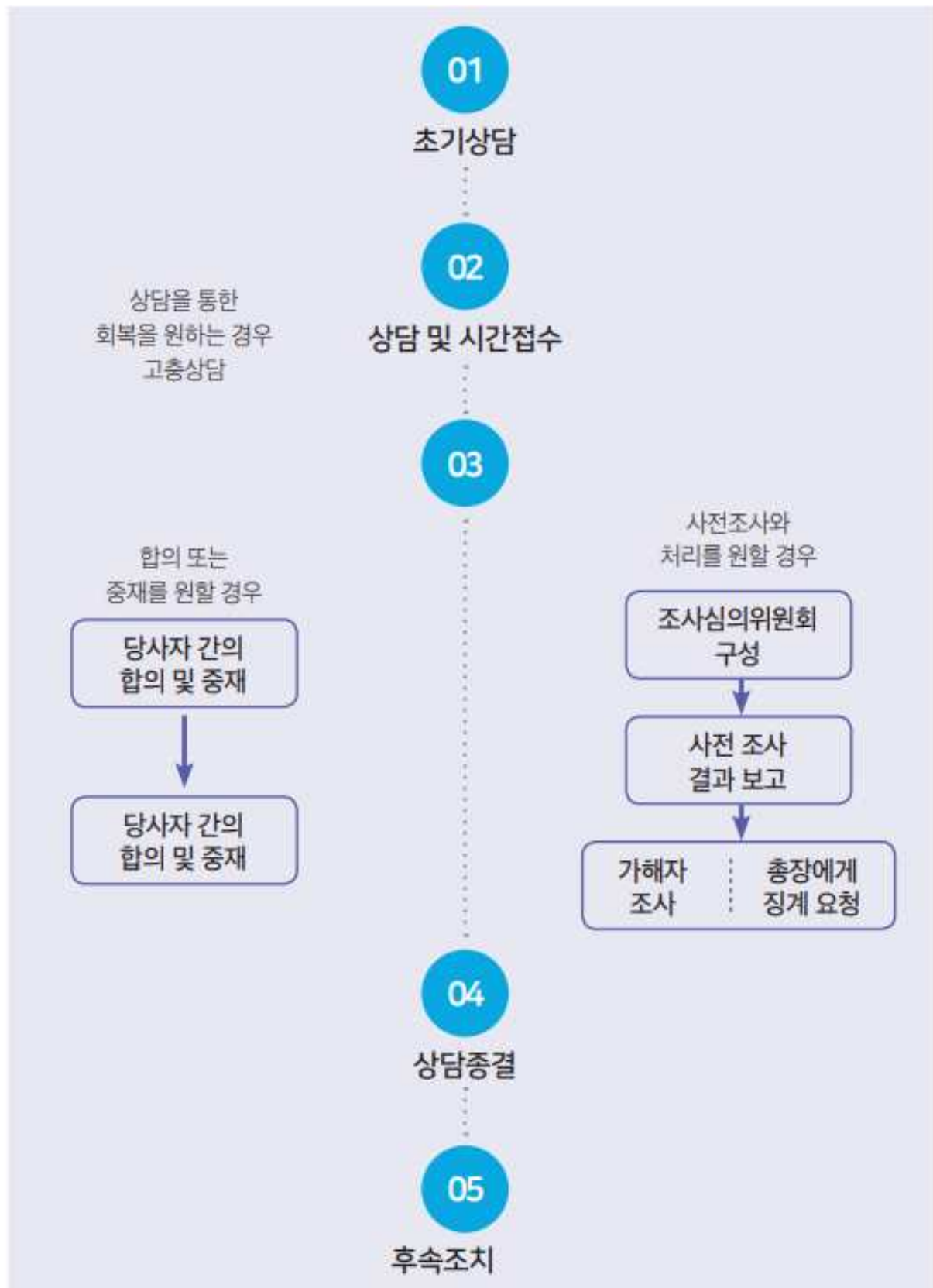
## 6.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인권침해<br>예방교육    |       |    |    |    |    |    |    |    |    |     |     |     |
| 상담실 운영          |       |    |    |    |    |    |    |    |    |     |     |     |
| 사건처리 운영         |       |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인권·성폭력<br>예방 홍보 |       |    |    |    |    |    |    |    |    |     |     |     |

## 7. 위기 대응 체계



<관련 절차>



| 구분 | 기관명        | 이용시간                                | 위치                 | 연락처(홈페이지)                                                                                                                                                                                                                   |
|----|------------|-------------------------------------|--------------------|-----------------------------------------------------------------------------------------------------------------------------------------------------------------------------------------------------------------------------|
| 신고 | 온라인        | 24시간                                |                    | <a href="http://counsel.silla.ac.kr/counsel/index.php?pCode=adviceCy">http://counsel.silla.ac.kr/counsel/index.php?pCode=adviceCy</a><br> |
|    | 해당과        | 학기중 평일 9시 ~ 17시<br>방학중 평일 10시 ~ 15시 | 해당 학부 및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 홈페이지 접속                                                                                                                                                                                                                     |
| 상담 | 학생<br>상담센터 | 학기중 평일 9시 ~ 17시<br>방학중 평일 10시 ~ 15시 | 화랑관 414호           | ☎ 999-6287<br>email : life_r2@silla.ac.kr                                                                                                                                                                                   |

### < 교내기관 접수 방법>

| 기관명                                            | 지원프로그램                                  | 주소                             | 연락처(홈페이지)                                                                                   |
|------------------------------------------------|-----------------------------------------|--------------------------------|---------------------------------------------------------------------------------------------|
| 부산해바라기센터<br>(통합형: 심리평가,<br>치료)                 | 위기상담, 의료, 법률,<br>수사지원서비스<br>(365일 24시간) | 서구 구덕로179(부산대학병원<br>핵의학연구동 3층) | <a href="http://www.pnuh.or.kr/sunflower/">http://www.pnuh.or.kr/sunflower/</a><br>244-1375 |
| 동부해바라기센터<br>(위기형)                              |                                         | 연제구 월드컵대로369<br>(부산의료원 지하 1층)  | <a href="http://www.bsonestop.or.kr/">http://www.bsonestop.or.kr/</a><br>501-9117           |
| 대한법률구조공단<br>부산지부<br>(아래 외 지역)                  | 무료 또는 소액 실비로<br>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 연제구 법원로 20<br>(동주빌딩 2,3층)      | <a href="http://www.klac.or.kr/">http://www.klac.or.kr/</a><br>505-1648                     |
| 대한법률구조공단<br>부산동부출장소<br>(남구, 기장군,<br>해운대구, 수영구) |                                         | 해운대구 재반로 176<br>(미진빌딩 4층)      | <a href="http://www.klac.or.kr/">http://www.klac.or.kr/</a><br>781-0710                     |
| 부산 사상경찰서                                       | 일반 성폭력 사건<br>및 피해자 보호지원                 | 사상구 학감대로 264                   | <a href="http://www.bspolice.go.kr/sasang/">www.bspolice.go.kr/sasang/</a><br>1566-0112     |

### < 교외기관 접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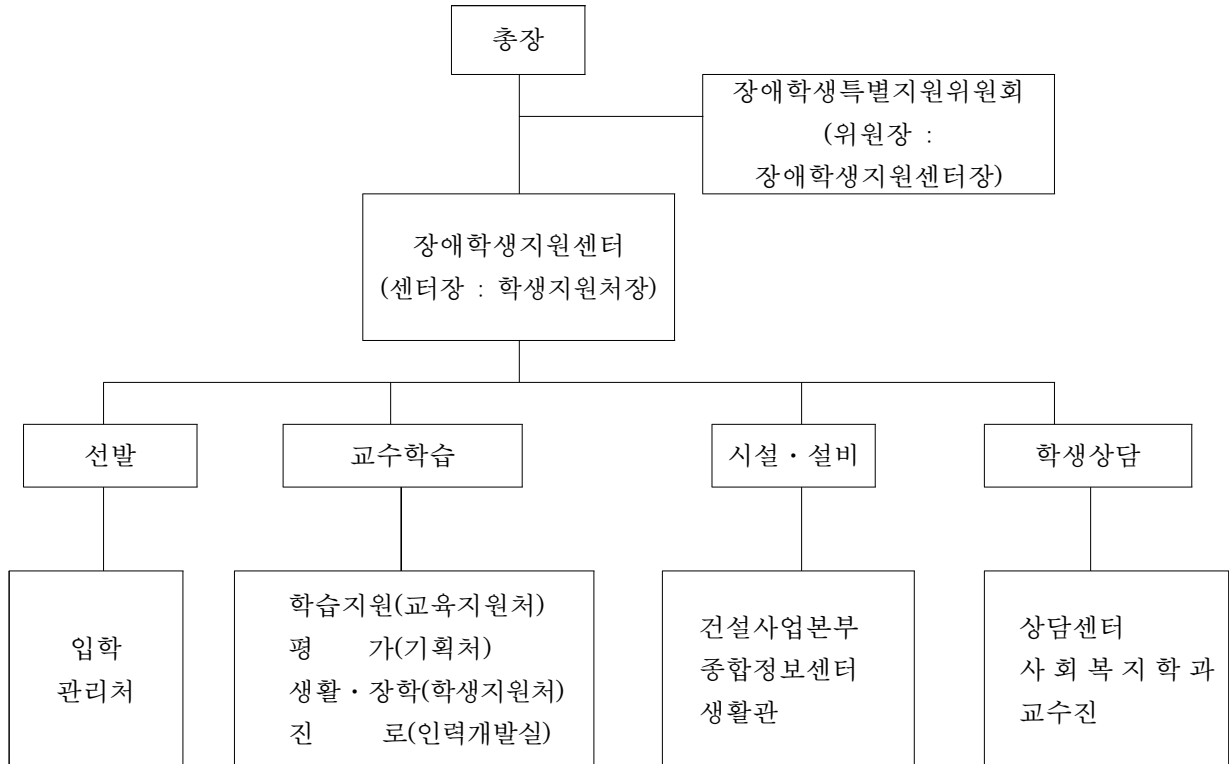


## 제10장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제고 계획

### 1. 개요

- 장애학생의 안전한 통학 및 이동을 위하여 학교 내 통학로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필요
- 전체 재학생 수에 비해 소수인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 및 인권제고
-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비장애학생, 직원 및 교·강사 등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 주고 편견을 없애기 위함

### 2. 조직도 및 실무위원 구성현황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
|-------------|----|
| 위원장         | 1명 |
| 위 원         | 6명 |
| 계           | 7명 |

### 3. 현황 및 실태

#### 가.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회의 실시

- 기간 : 연 2회
- 주요내용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개선
    - 장애인 시설 개선
    - 장애학생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

#### 나. 장애학생 관련 사업 실시

- 교수-학습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 장애학생 학업 결손 방지를 위한 학습도우미 제도 실시
- 장애학생 선수강신청제 실시
- 장애학생 학점등록제 실시
-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제작 자원봉사 개최
- 장애학생 및 학부모 개별 상담 및 상담 전문가 연계
- 장애학생 간담회 실시(연 2회)

#### 다.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국가근로 장애학생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도우미 활동비 지급
  - ※ 국고보조금 80%, 교비대응금 20%

- 매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선발
- 장애학생 도우미 사전교육
  -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이해교육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학생 도우미 소양 교육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

#### 라.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 기간 : 장애인의 날(4/20) 전후 3~5일 간
- 대상 : 전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
- 협력 : 장애학생 동아리 동그라미
- 주요내용
  - 비장애인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 주고 편견을 없애기 위함
  - 장애학생 인권 제고를 위함
  -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캠퍼스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지체 등) 체험 실시

#### 마.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 기간 : 연 1회
- 대상 : 전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
- 협력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주요내용
  -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바.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실시간 단속 운영

○ 기간 : '23년 연중

○ 운영내용

-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 동아리 동그라미가 협력하여 교내 통학로 및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실시간 단속 및 경고딱지 부착

- 대상 불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 사. 장애학생 개별 상담 진행

○ 기간 : '23년 연중

○ 대상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 학부모

○ 운영내용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의 대학 생활 중 불편 사항이나 학습, 개인 고민 등을 상담

- 심화상담의 경우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 4. 2023년 추진계획 및 일정

| 사업 내용                  |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장애학생 학점등록제 실시          | ▶     | ▶  |    |    |    |    | ▶  | ▶  |    |     |     |     |
| 장애학생 선 수강신청제 실시        | ▶     | ▶  |    |    |    |    | ▶  | ▶  |    |     |     |     |
|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 ▶  |    |    |    |    |    |    |    |     |     |     |
| 장애학생 도우미 사전교육          |       |    | ▶  |    |    |    |    |    | ▶  |     |     |     |
|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제작 봉사활동    |       |    | ▶  |    |    |    |    |    | ▶  |     |     |     |
|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       |    |    | ▶  |    |    |    |    |    |     |     |     |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       |    |    |    |    |    |    |    |    | ▶   |     |     |
|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       |    |    | ▶  |    |    |    |    |    | ▶   |     |     |
| 장애인 주차구역 차량 단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장 | 학생 교외활동 안전교육

### 1. 개 요

가.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및 안전사고 대비 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처 능력 제고

나. 변화하는 재난, 안전 환경 대응 능력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2. 주요사업(내용)

가. 안전교육 및 사전 점검 강화

1) 교외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 전 안전사고예방 체크 리스트(숙박시설 점검, 교통수단 점검, 보험가입, 행사전 답사 등) 및 안전수칙 준수 약속서 작성 의무화

2) 행사장소의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를 참가자 전체에게 제공 하도록 교육

3) 교외행사 시 보험가입 의무화

4)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안내

나.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이용한 사전 교육 강화

### 3.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가.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

나. 학부모 연락 및 해당학과, 총장 연락

다. 사고처리

라. 후속조치(사고원인 파악 및 역학조사)

마. 해당 지자체와 교육부 등에 피해상황 통보

바. 자가진단(자가진단을 통해 추후 유사사고 발생 방지)

#### 4.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신입생<br>오리엔테이션 및<br>예비대학 안전교육                    |       |    |    |    |    |    |    |    |    |     |     |     |
| 학과 교외행사 관련<br>안전교육                              |       |    |    |    |    |    |    |    |    |     |     |     |
| 학생자치기구<br>교외행사 관련<br>안전교육<br>(농촌봉사활동,<br>수련회 등) |       |    |    |    |    |    |    |    |    |     |     |     |
| 안전사고 발생 시<br>대책위원회 운영                           |       |    |    |    |    |    |    |    |    |     |     |     |

#### 5.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가. 경찰서 : 112

나. 소방서 :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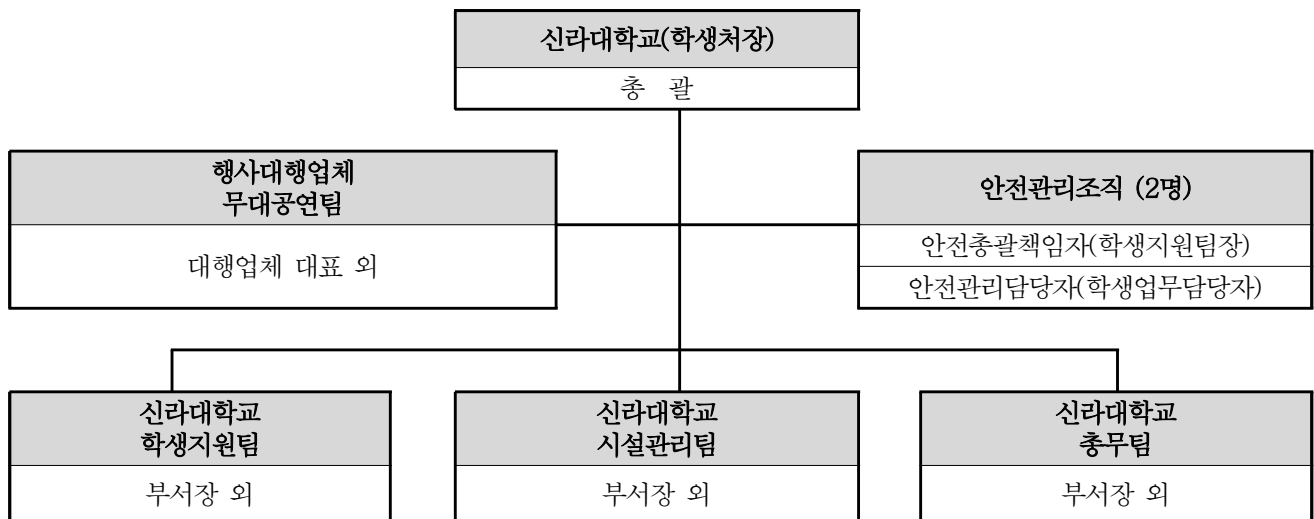
다. 교육부 : 044) 203-6118

## 제12장 | 교내 대학 축제 안전관리

### 1. 개 요

- 가. 대학축제 행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및 안전사고 대비 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처 능력 제고  
 나. 변화하는 재난, 안전 환경 대응 능력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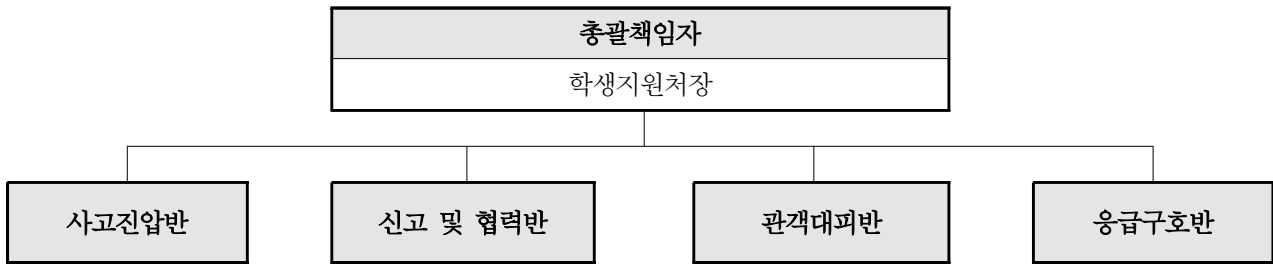
### 2. 공연시설(장소)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 관리 조직 | 책임자       | 담당업무                                      |
|-------|-----------|-------------------------------------------|
| 총괄    | 학생지원처장    | 관객, 공연자 안전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안전관리조직 포함) |
| 무대공연팀 | 행사대행업체    | 무대시설, 음향, 조명 유지 관리                        |
| 학생지원팀 | 학생지원팀장    | 관객 및 공연자 안전 관리, 버스 노선 관리 등                |
| 의료지원실 | 의료지원실 담당자 |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조치                           |
| 시설관리팀 | 시설관리팀장    | 전기, 기계, 방재설비, 시설 관리                       |
| 총무팀   | 총무팀장      | 건물 통제, 차량 통제, 안전관리, 외부인 관련 민원 등           |

### 3.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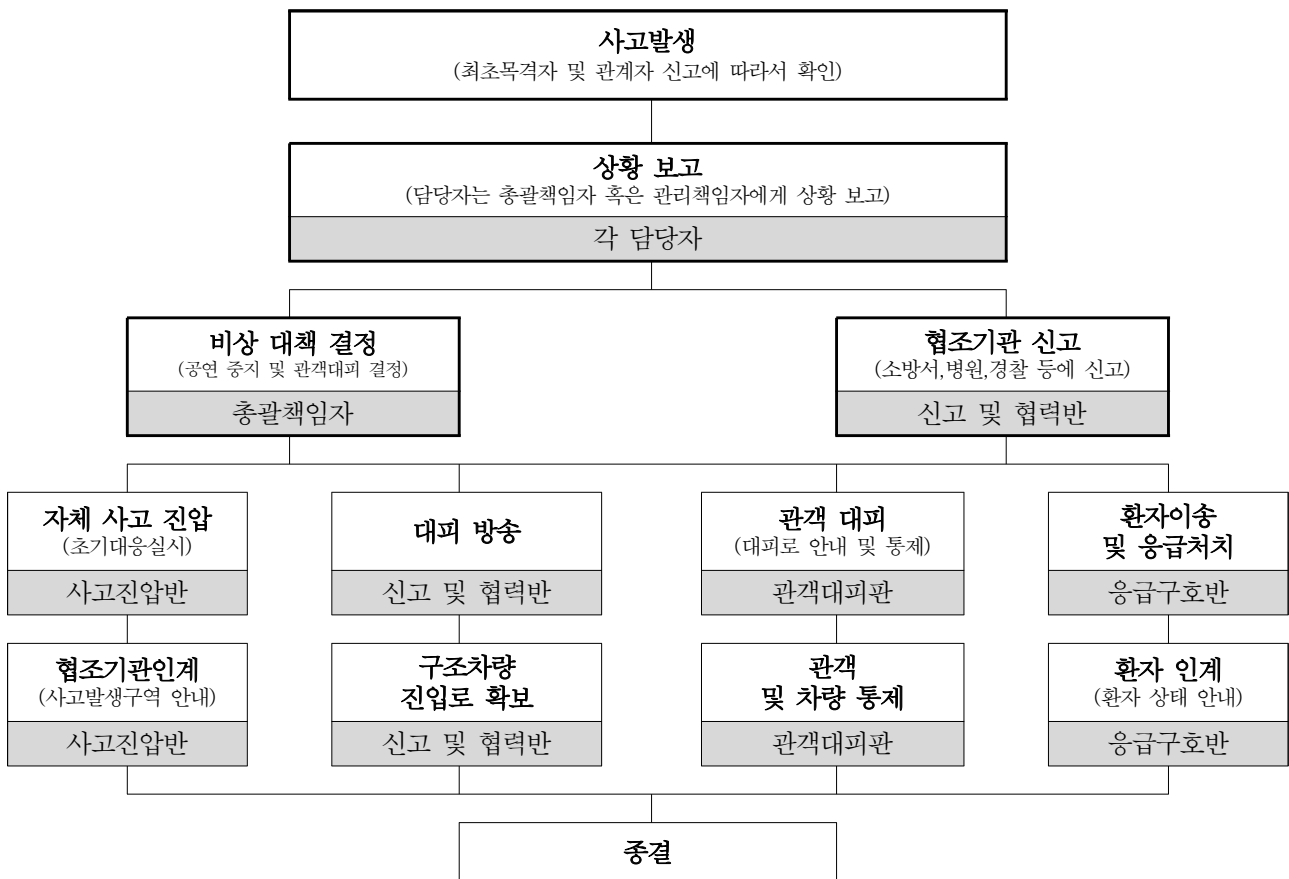
- 가. 비상 시 안전관리조직



※ 학생으로 구성된 안전요원 및 경호요원 30여명을 별도 안전관리 조직으로 편성/운영함.

※ 행사기간 동안 대학직원 10명을 특별안전관리요원으로 운영하여, 대학 내 위험구역을 순찰/지도함.

## 나. 비상 시 조치 계획





## 다. 임무 및 역할

| 비상 조직  | 임무 및 역할                     | 비고 |
|--------|-----------------------------|----|
| 총괄책임자  | 행사총괄 책임자                    |    |
| 관객대피반  | 관객 대피 및 출입구 개방, 사고 발생 지역 차단 |    |
| 사고진압반  | 초기 대응 및 자체 사고 진압            |    |
| 신고/협력반 | 협조 기관 신고 및 상황 보고, 협조 기관 인계  |    |
| 응급구호반  | 환자 이송 및 응급 처치               |    |

| 협조기관명    | 내용                     | 연락처                      | 비고 |
|----------|------------------------|--------------------------|----|
| 에스원 상황실  | 긴급상황 발생 시              | 999-5384                 |    |
| 소방방재청    | 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 응급의료 | 119                      |    |
| 부산 북부소방서 | 관할 소방서                 | 302-0119                 |    |
| 부산 사상경찰서 | 삼락지구대                  | 329-0152                 |    |
| 한국전기안전공사 | 부산울산지역본부               | 960-5200                 |    |
| 한국가스안전공사 | 부산지역본부                 | 646-0119                 |    |
| 서부산센텀병원  | 응급의료                   | 1644-5530<br>(야)329-3119 |    |
| 부산보훈병원   | 응급의료                   | 601-6000                 |    |

## 4.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

### 가. 화재사고 예방계획

#### 1) 소방시설 및 화재 취약 구역 점검 계획

##### 가) 화재 취약구역 자체점검

| 점검구역                   | 점검계획                                                                                                                                                                                         |
|------------------------|----------------------------------------------------------------------------------------------------------------------------------------------------------------------------------------------|
| 전기시설                   | ·담당자 : 신라대 시설관리팀 팀장 / 위탁업체 무대설치 담당자<br>·점검시기 : 무대 세트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br>·점검방법 : 육안점검(케이블 배선 상태 확인, 전장부품 작동 상태 확인 등)                                                                        |
| 객석 구역<br>주변에 있는<br>나무숲 | ·담당자 : 신라대학교 시설관리팀<br>·점검시기 : 공연 전, 공연 중 수시 간격 순찰<br>·점검방법 : 육안점검(인화물질 확인 및 제거, 흡연자 통제 등)                                                                                                    |
| 무대공간                   | ·담당자 : 신라대 시설관리팀 담당 직원 / 위탁업체 무대설치 담당자<br>·점검시기 : 무대 세트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br>·점검대상 : 하부트랩, 상부 조명시설<br>·점검방법 : 육안점검 및 전압측정<br>→ 하부트랩 동력장치 작동 상태 확인, 조명기 전원 전압 상태 확인,<br>구동부 주변 인화물질 제거 및 청소 등 |

## 나) 소방서와 협동점검

| 점검구역            | 점검계획                                                                                                                 |
|-----------------|----------------------------------------------------------------------------------------------------------------------|
| 소방 시설<br>및 피난시설 | ·담당자 : 신라대학교 시설관리팀 , 총무팀<br>·점검시기 : 재해대처계획 신고 후<br>·점검대상 : 소화기, 비상통로, 출입구 등<br>·점검방법 : 소방서 직원과 함께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통로 점검 |

## 2) 소방 안전교육

| 항목   | 내용                                                                                                   |
|------|------------------------------------------------------------------------------------------------------|
| 교육대상 | 공연 관계자들에게 소방 안전교육 실시                                                                                 |
| 교육시간 | 공연 전 1시간                                                                                             |
| 교육강사 | 외부 전문강사                                                                                              |
| 교육내용 | ·화재 취약 구역 설명<br>·화재 시 관객 대피유도 요령<br>·화재발생 시 행동 및 조치 요령(초기진화 및 소방시설 사용법)<br>·축제 관련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 3) 화재예방 협조 기관

| 협조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
| 북부소방서 | 현장대응단 | 051-760-4406 |
| 북부소방서 | 예방안전과 | 051-760-4404 |

## 나. 안전사고 예방계획

### 1) 위험 요소 점검 및 안전사고 방지 계획

#### 가) 무대구역 위험요소 점검

| 점검구역          | 점검계획                                                                                                                                                   |
|---------------|--------------------------------------------------------------------------------------------------------------------------------------------------------|
| 와이어로프         | ·담 당 자 : 무대기술팀 직원<br>·점검시기 : 리허설 전, 공연 전<br>·점검대상 : 무대 세트 고정용 와이어로프<br>·점검방법 : 육안점검(와이어로프 체결도구 고정상태, 와이어로프 외관 상태 확인 등)                                 |
| 특수 효과<br>(불꽃) | ·담 당 자 : 특수효과 설치 전문가<br>·점검시기 : 특수 효과 장치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br>·점검대상 : 특수 효과 장치 및 인접 시설<br>·점검방법 : 육안점검 및 작동 테스트 실시                                     |
| 리깅 스피커        | ·담 당 자 : 무대기술팀 직원<br>·점검시기 : 리깅 스피커 설치 후, 리허설 전, 공연 전<br>·점검대상 : 리깅 스피커 고정부, 체인 연결부<br>·점검방법 : 육안점검 (리깅 스피커 고정부 트러스 변형 상태 확인, 체인 육안점검, 고정도구 체결상태 확인 등) |

## 나) 객석구역 위험요소 점검

| 점검구역    | 점검계획                                                                                               |
|---------|----------------------------------------------------------------------------------------------------|
| 도서관 옥상  | 1. 개구부 (추락 가능 지역)<br>2. 환기구<br>3. 옥상 난간<br>※ 점검 후 보강 및 안전띠 설치를 검토하고 행사 시 안전 요원 배치                  |
| 운동장 스탠드 | 1. 스탠드 뒤 절사면 점검<br>2. 절사면<br>※ 점검 후 보강 및 안전띠 설치를 검토하고 행사 시 안전 요원 배치                                |
| 무대 주변   | 1. 무대 뒤편 계단 점검<br>2. 무대 앞 안전펜스<br>3. 무대와 공연자 접촉 분리 상태 점검<br>※ 점검 후 보강 및 안전띠 설치를 검토하고 행사 시 안전 요원 배치 |

## 다) 공연자 안전 교육

| 항목   | 내용                                                                                                                                                                                                                                           |
|------|----------------------------------------------------------------------------------------------------------------------------------------------------------------------------------------------------------------------------------------------|
| 교육대상 | 공연자 및 행사 관련자 전원                                                                                                                                                                                                                              |
| 교육시간 | 공연 전 1시간                                                                                                                                                                                                                                     |
| 교육강사 | 외부 전문 강사                                                                                                                                                                                                                                     |
| 교육내용 |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 관련 공연자 안전교육<br>-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br>-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br>-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br>-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br>-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br>-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br>-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라) 안전사고 예방 협조 기관

| 기관명   | 부서    | 연락처          | 협조내용     |
|-------|-------|--------------|----------|
| 북부소방서 | 구조구급과 | 051-760-4405 | 환자이송     |
| 사상경찰서 | 경비교통과 | 051-329-0352 | 관객 통제 지원 |

## 제13장 |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계획

### 1. 개요

- 재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지원
- 심리적 안정의 체계적 개입을 위한 심리검사 지원
- 학내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살위기대응 체계에 따라 위기대응

### 2. 조직도



|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 |    |
|--------------|----|
| 위원장          | 1명 |
| 위 원          | 5명 |
| 계            | 6명 |

| 학생상담센터 외부 상담원 |     |
|---------------|-----|
| 객원 상담원        | 10명 |
| 인턴 상담원        | 7명  |
| 계             | 17명 |

### 3. 지원 내용 및 추진 일정

| 구분                 | 사업명                                   | 내용                                                     |
|--------------------|---------------------------------------|--------------------------------------------------------|
| 심리적<br>안정<br>상담 지원 | 개인상담                                  | 전문 상담사와 1:1 면담을 통해 다양한 심리갈등, 문제 조력                     |
|                    | 심리검사                                  | 성격특성, 심리 적응 상태, 진로 및 적성탐색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 및 평가             |
|                    | 중도탈락예방 ‘하나를 위한 전부’                    | 심리적 취약성으로 기인한 중도탈락 위기학생을 돕는 토털 케어 심리상담                 |
|                    | 유학생 심리상담                              | 유학생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 도모                            |
|                    | SDSP<br>(Silla Dream Support Program) | 성격·적성진로 탐색을 위한 집단 심리검사 및 심리검사를 활용한 학과단위 특강             |
|                    | 자아성장 집단상담                             | 대인관계기술, 스트레스 관리, 부자되는 습관, 미루는 습관 바꾸기, 힐링액티브 등 주제별 집단상담 |
|                    | 찾아가는<br>마인드버스킹                        | 적응 취약군(기숙사생, 유학생, 편입생, 전과생, 저학년) 중심의 맞춤형 집단프로그램        |
|                    | 또래상담제                                 | 또래상담자(멘토)가 대학적응이 어려운 멘티를 1:1 또래상담함                     |
|                    | 교직원 상담기법<br>역량강화                      | 학생 면담 시 필요한 면담과정과 효과적인 상담기법 제공을 위한 심리상담 전문가 특강         |
| 위기대응<br>및<br>회복 지원 | 위기상담                                  | 자살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전문 위기상담                                 |
|                    | 응급대응                                  | 정신건강 응급상황 발생 시 생명 안정화 대응 및 지원                          |
|                    | 마음건강검진                                |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대상 정신건강 전수조사                             |
|                    | 고위험군<br>정서안정화<br>집단상담                 |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의 정서 안정화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
|                    | 정신건강<br>캠페인                           |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보제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험활동 중심의 캠페인       |
|                    | 재학생 대상<br>자살예방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청년 정신건강, 마음관리법 등 다양한 주제의 정신건강 특강             |
|                    | 교직원 대상<br>자살예방교육                      | 자살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학교생활관리 및 지도를 위한 정신과 전문의 특강           |

| 주요내용            |                     |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심리적 안정<br>상담 지원 | 개인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리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단상담                |       |    |    |    |    |    |    |    |    |     |     |     |
|                 | 교직원<br>상담기법<br>역량강화 |       |    |    |    |    |    |    |    |    |     |     |     |

[illegible]

#### 4. 위기대응 체계

| 구분        | 주요역할  |                                                                                                                                                                                                                                             |
|-----------|-------|---------------------------------------------------------------------------------------------------------------------------------------------------------------------------------------------------------------------------------------------|
| 위기<br>주관팀 | 센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대응 총괄</li> <li>• 위기학생비상대책회의 소집 및 주재</li> </ul>                                                                                                                                                   |
|           | 상담교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현장 감독</li> <li>• 학내외 기관과 위기대응 방안 조율</li> </ul>                                                                                                                                                   |
|           | 연구원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면담</li> <li>• 자살위기개입 시급성 평가지표 작성</li> <li>• 학생 안전보호 및 후속 모니터링</li> <li>• 학생 긴급구조, 병원 응급실 후송 시 동행(2인 1조)</li> </ul>                                                                               |
|           | 연구원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부 보고 : 연구원 → 상담교수 → 센터장</li> <li>• SNS 채널 개설 : 실시간 상황 보고 및 대응방안 논의 (대상자 : 위기학생비상대책회의 구성원 모두)</li> <li>• 안전지원 요청 : 119, 112,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등</li> <li>• 학생 긴급구조, 병원 응급실 후송 시 동행(2인 1조)</li> </ul> |
|           | 연구원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대응보고서 작성</li> <li>• 보호인력의 안전 모니터링 관리</li> <li>• 실시간 학내 위기대응 업무 처리</li> </ul>                                                                                                                     |
|           | 연구원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1, 2, 3의 상시 업무 대행</li> </ul>                                                                                                                                                                   |
| 위기<br>지원팀 | 행정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주관팀 업무 보조</li> </ul>                                                                                                                                                                             |

**신라대학교 자살 위기대응 체계**

```

graph TD
    A[위기의심 학생 발견] --> B[학생상담센터 의뢰·접수]
    B --> C[위험성 평가]
    C --> D[위기대응 상황]
    C --> E[위기대응 상황 없음]
    
    D --> F[고위험군]
    F --> G[간접 고위험군]
    F --> H[고위험군]
    
    G --> I[간접 구조/후송 112, 119]
    G --> J[위기학생비상대책회의 소집]
    G --> K[보호자 고지]
    J --> L[합조: 위기학생비상대책회의 대응 지침]
    
    H --> M[위기관리 서비스 권유]
    M --> N[수락]
    M --> O[거부]
    N --> P[위기관리 서비스 동의서 작성]
    O --> Q[위기학생비상대책회의 소집]
    Q --> R[위기관리 서비스 재권유]
    R --> S[수락]
    R --> T[거부]
    
    E --> U[잠재적 고위험군]
    U --> V[정기적 상담 권유]
    V --> W[수락]
    V --> X[거부]
    W --> Y[학생 맞춤형 상담 진행]
    X --> Z[위기대처 방법 안내]
    Y --> AA[일반 개인상담, 중도탈락 예방 개인상담, 생명존중 개인상담]
    Z --> AB[위기대응명령 전달, 관련기관 안내]
    AA --> AC[사례 증결]
    AB --> AD[개입 종료]
    
    P --> AE[지역장신건강복지센터 공조]
    P --> AF[위기학생비상대책회의 소집]
    P --> AG[보호자 고지]
    AE --> AH[병원 응급실 입원]
    AG --> AI[보호자 인계]
    AH --> AJ[상담·정신과 치료]
    AI --> AJ
    AJ --> AK[호전]
    AJ --> AL[상태 악화 또는 미호전]
    AK --> AM[사례 증결]
    AL --> AN[휴학 필요성 논의]
    AM --> AO[사후 모니터링]
    
    T --> AP[보호자 즉시 인계 가능]
    T --> AQ[보호자 즉시 인계 불가능]
    T --> AR[모든 위기관리 재안 거부]
    AP --> AS[보호자 고지]
    AQ --> AT[보호자 고지]
    AR --> AU[위험성 고려 후 필요시 보호자 고지]
    AS --> AV[학생 위기대처 방법 안내]
    AT --> AW[보호인력 선정]
    AU --> AX[거부의사확인서 작성]
    AW --> AY[개입 종료]
    AX --> AZ[안전계획동의서 작성]
    AX --> BA[보호인력을 통한 학생 모니터링]
    AZ --> BB[추후방향 설정]
    AZ --> BC[학생 인계]
    AZ --> BD[위기대처 방법 안내]
    BB --> BE[개입 종료]
    BC --> BE
    BD --> BE
  
```

|                       |                         |                 |
|-----------------------|-------------------------|-----------------|
| 경찰서 : 112<br>(위급상황신고) | 자살예방상담전화 : 1393         | 여성 긴급전화 : 1366  |
| 소방서 : 119<br>(안전신고센터) | 정신건강상담전화 :<br>1577-0199 | 청소년 상담전화 : 1388 |

## 제14장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계획

### 1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구 분 | 담당 부서  | 직책  | 성 명  | 연락처                               | 비고    |
|-----|--------|-----|------|-----------------------------------|-------|
| 처장  | 사무처    | 처장  | 김 학술 | 051-999-5205, hskim@silla.ac.kr   | 주 관부서 |
| 팀장  | 시설관리팀  | 팀장  | 김수동  | 051-999-5594, ksd007@silla.ac.kr  |       |
| 팀원  | 시설관리팀  | 팀원  | 신용욱  | 051-999-5094 isma72@silla.ac.kr   |       |
| 팀장  | 총무팀    | 팀장  | 장주욱  | 051-999-5219, jjoouk@silla.ac.kr  | 협 조부서 |
| 팀원  | 총무팀    | 팀원  | 방정훈  | 051-999-5820, jhoon@silla.ac.kr   |       |
| 팀장  | 생활관행정팀 | 부팀장 | 하승희  | 051-999-6404, ha@silla.ac.kr      | 협 조부서 |
| 팀원  | 생활관행정팀 | 팀원  | 박정숙  | 051-999-7676, suepark@silla.ac.kr |       |

###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 피해현황

|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평균 |
|-----------|--------|------|------|------|------|----|
| 발생건수      | 1      | 2    | 1    | 1    | 0    | 1  |
| 재산피해(백만원) | 0      | 0    | 0    | 0    | 0    | 0  |
| 인명 피해     | 사망(실종) | 0    | 0    | 0    | 0    | 0  |
|           | 부상     | 1    | 2    | 1    | 1    | 1  |
|           | 계      | 1    | 2    | 1    | 1    | 1  |



## □ 원인분석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소방서, 사상경찰서 및 사상구 합동조사 결과
  - 산업안전·보건 보호대상의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전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당해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대상근로자 선정                                                                                   | 교육방법 선정                                                            | 교육 실시                                                                         | 서류보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원</li> <li>• 관리감독자</li> <li>• 신규 입사자</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집체/현장/인터넷</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교육</li> <li>• 채용 시 교육</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li> </ul> |

#####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 측정대상물질 확인                                                             | 예비조사                                                                              | 작업환경측정 실시                                                               | 결과보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의 보존기한</li> </ul> |

####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대상근로자 선정                                                                                                                                         |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직) 2년에 1회</li> <li>(사무직 외) 1년에 1회</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진 대상자 독려</li> </ul> |

####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사고</li> <li>3일 이상 휴업재해</li> <li>중대재해(즉시 보고)</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li> <li>-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발방지계획서 작성</li> <li>수시위험성평가</li> <li>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li> </ul> |

####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 대상작업 파악                                                                 |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보호구 지급                                                                    | 서류보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li> </ul> |

####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 >

| 사건 종결 권한 | 사고 심각성 등급 |
|----------|-----------|
| 사무처장     | 관심 (파란색)  |
|          | 주의 (노란색)  |
| 총장       | 경계 (주황색)  |
| 교육부장관    | 심각 (빨간색)  |

####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이행계획

|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
| 의무주체    | 사업주(총장)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
| 처벌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무처장)<br>(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br>(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재해정의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br>- 사망자 1명 이상 발생<br>-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br>-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
| 의무 이행사항 |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br>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br>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br>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br>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br>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br>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br>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br>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 주체                                  | 주요 업무                                                                                                                                                                                                                                                                                                      |                                                                                                            |                   |                                                                                                            |
|-------------------------------------|------------------------------------------------------------------------------------------------------------------------------------------------------------------------------------------------------------------------------------------------------------------------------------------------------------|------------------------------------------------------------------------------------------------------------|-------------------|------------------------------------------------------------------------------------------------------------|
| <b>사업주<br/>[총장]</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li> <li>■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li> <li>■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li> </ul>                                                                                                                                                              |                                                                                                            |                   |                                                                                                            |
| <b>안전보건<br/>관리책임자<br/>[사무처장]</b>    | <p>&lt;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li> <li>■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li> <li>■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li> <li>■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li> </ul>                                                                             |                                                                                                            |                   |                                                                                                            |
|                                     | <b>안전<br/>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br/>(대한산업안전협회 업무 위탁)</li> </ul> | <b>보건<br/>관리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br/>(대한산업보건협회 업무 위탁)</li> </ul> |
| <b>관리감독자</b>                        | <p>&lt;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li> <li>■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li> <li>■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li> <li>■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li> </ul> |                                                                                                            |                   |                                                                                                            |
| <b>산업보건의</b><br>(대한산업보건협회<br>업무 위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li> <li>■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li> <li>■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li> </ul>                                                                                                 |                                                                                                            |                   |                                                                                                            |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대책명        | 연도별 예산(백만원) |      |      |      | 비고 |
|------------|-------------|------|------|------|----|
|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산업안전관리업무위탁 | 5           | 5    | 5    | 15   |    |
| 산업보건관리업무위탁 | 4.2         | 4.6  | 4.6  | 13.4 |    |
| 안전교육       | 1.2         | 1.2  | 1.2  | 3.6  |    |
| 계          | 10.4        | 10.8 | 10.8 | 32   |    |

## 2 중대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구 분 | 담당 부서  | 직책  | 성 명 | 연락처                               | 비고   |
|-----|--------|-----|-----|-----------------------------------|------|
| 처장  | 사무처    | 처장  | 김학술 | 051-999-5205, hskim@silla.ac.kr   | 주관부서 |
| 팀장  | 시설관리팀  | 팀장  | 김수동 | 051-999-5594, ksd007@silla.ac.kr  |      |
| 팀원  | 시설관리팀  | 팀원  | 신용욱 | 051-999-5094 isma72@silla.ac.kr   |      |
| 팀장  | 총무팀    | 팀장  | 장주욱 | 051-999-5219, jjoouk@silla.ac.kr  | 협조부서 |
| 팀원  | 총무팀    | 팀원  | 방정훈 | 051-999-5820, jhoon@silla.ac.kr   |      |
| 팀장  | 생활관행정팀 | 부팀장 | 하승희 | 051-999-6404, ha@silla.ac.kr      | 협조부서 |
| 팀원  | 생활관행정팀 | 팀원  | 박정숙 | 051-999-7676, suepark@silla.ac.kr |      |

###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

### □ 피해현황

| 구 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평균 |
|-----------|--------|------|------|------|------|----|
| 발생건수      | 0      | 0    | 0    | 0    | 0    | 0  |
| 재산피해(백만원) | 0      | 0    | 0    | 0    | 0    | 0  |
| 인명피해      | 사망(실종) | 0    | 0    | 0    | 0    | 0  |
|           | 부상     | 0    | 0    | 0    | 0    | 0  |
|           | 계      | 0    | 0    | 0    | 0    | 0  |

### □ 원인분석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소방서, 사상경찰서 및 사상구 합동조사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없으나, 최근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관리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 의견수렴                                                                                                        | 노사 간담회<br>(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 협의)                                                       | 개선조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방문 의견 청취</li> <li>• 의견청취함(WIKI 게시판)</li> <li>• 안전보건교육</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청된 의견에 대한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조치</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너무 커서(100L) 근골격계에 부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 간담회(또는 안전관련 회의)에서 반영 여부 검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내 분리배출 봉투를 50L로 교체</li> </ul> |

####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미한 사고</li> <li>• 3일 이상 휴업재해</li> <li>• 중대재해(즉시 보고)</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li> <li>-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방지계획서 작성</li> <li>• 수시위험성평가</li> <li>•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li> </ul> |

####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 >**

| 사건 종결 권한 | 사고 심각성 등급 |
|----------|-----------|
| 총장       | 관심 (파란색)  |
|          | 주의 (노란색)  |
| 이사장      | 경계 (주황색)  |
| 교육부장관    | 심각 (빨간색)  |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
| 의무주체    |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
| 보호대상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 처벌대상    | <b>경영책임자(이사장)</b><br>(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br>(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재해정의    | <b>(중대산업재해)</b>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br>- 사망자 1명 이상<br>-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br>-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br><b>(중대시민재해)</b>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
| 의무 이행사항 | <b>&lt;&lt;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gt;&gt;</b><br>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br>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br>※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br>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br>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br>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br>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br>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br>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br>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br><br><b>&lt;&lt;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gt;&gt;</b><br>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br>2. 인력, 예산 지원<br>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체계



### ○ 역할과 책임

| 구분                      | 주요 역할                                                                                                                                                                                                                                                                                                                                                                                                       |
|-------------------------|-------------------------------------------------------------------------------------------------------------------------------------------------------------------------------------------------------------------------------------------------------------------------------------------------------------------------------------------------------------------------------------------------------------|
| 경영책임자(이사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대표 및 총괄</li> </ul>                                                                                                                                                                                                                                                                                                                                              |
| 안전보건총괄<br>관리책임관<br>(총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사전·사후 지원 및 지도 등 관련업무 전반을 총괄·지도</li> <li>① 소속기관과 국립특수학교의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li> <li>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li> <li>③ 직종별 사업장별 위해요인 확인 개선 방법 지도 및 지원</li> <li>④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li> <li>⑤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li> <li>*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현장에 재해예방 안착 전까지 안전보건 이행상황 수시 점검(현장방문 및 서면 포함 월 1회 이상)</li> </ul> |
| 안전보건관리<br>책임자<br>(사무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li> <li>•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li> <li>•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li> <li>•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li> </ul>                                                                                                                                                                                                                               |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대책명     | 연도별 예산(백만원) |      |      |    | 비고 |
|---------|-------------|------|------|----|----|
|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중대재해 대비 | 0           | 0    | 0    | 0  |    |
| 계       | 0           | 0    | 0    | 0  |    |



## 1

## 재난 상황실 운영

## □ 재난 단계별 운영 계획

|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
| 1단계 :<br>(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시간 중 : 주관부서 책임으로 상황 모니터링</li> <li>• 근무시간 외(17:00 ~ 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부서 직원 각 1명 교대 근무</li> </ul> </li> <li>• 주요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근무 태세 준비 및 조치</li> <li>- 주요 시설물 순찰 점검 강화 등</li> </ul> </li> </ul>                                                                                                                                                                                    |     |
| 2단계 :<br>(경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부서 팀장 및 부서장 비상근무체제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시간 중 : 담당자 비상근무 체제 돌입</li> <li>- 근무시간 외(17 : 00 ~ 24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직원 1명(교대 근무)</li> </ul> </li> </ul> </li> <li>• 주요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조치<br/>(홍수·태풍 취약지역, 학생·교직원 긴급대피 조치 및 수용 조치)</li> <li>-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li> <li>-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보고 조치</li> </ul> </li> </ul> |     |
| 3단계 :<br>(심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재난사고 수습본부 구성·운영</li> </ul>                                                                                                                                                                                                                                                                                                                                                                                                                                                                   |     |

## □ 실무 매뉴얼 현황

| 구 분                 | 내 용               | 담당부서                    | 비 고    |
|---------------------|-------------------|-------------------------|--------|
| 풍수해<br>위기대응 매뉴얼     | 태풍, 호우, 대설        | 시설관리팀                   |        |
| 황사·폭염 대응 매뉴얼        | 황사·폭염             | 학생지원팀                   |        |
| 화재, 정전 대응 매뉴얼       | 화재, 폭발, 정전        | 시설관리팀                   |        |
| 원자력 안전<br>위기대응 매뉴얼  | 방사능 방호·방제         | 시설관리팀                   |        |
| 전염병<br>위기대응 매뉴얼     | 법정 전염병            | 학생지원팀<br>(의료지원실)        |        |
| 식중독<br>위기대응 매뉴얼     | 식중독               | 학생지원팀                   | 식당(외주) |
| 학교폭력(성폭력) 대응<br>매뉴얼 | 성희롱, 성폭력,<br>범죄행위 | 학생지원팀<br>학생상담센터<br>인권센터 |        |
|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교내 시설물 전체         | 시설관리팀                   |        |
| 연구실 안전 매뉴얼          | 연구실 안전환경          | 시설관리팀                   |        |



## 3

##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 현황 (2023. 12. 31.)

##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 구분  | 대인(학교구성원) | 대물(교육시설)  |
|-----|-----------|-----------|
| 대 학 | KB손해보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 연구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 민법 &amp; 학교안전법

##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 기<br>준<br>연<br>도 | 보험(공제)<br>상<br>품<br>명 | 시작일<br>종료일               | 1인당<br>보<br>험<br>료<br>(A) | 학<br>생<br>수<br>(B) | 연<br>간<br>총<br>보<br>험<br>료<br>(C) | 보<br>험<br>(공제)청<br>구 |        |        |        | 비<br>고 |
|------------------|-----------------------|--------------------------|---------------------------|--------------------|-----------------------------------|----------------------|--------|--------|--------|--------|
|                  |                       |                          |                           |                    |                                   | 인<br>적               |        | 물<br>적 |        |        |
|                  |                       |                          |                           |                    |                                   | 건<br>수               | 금<br>액 | 건<br>수 | 금<br>액 |        |
| 2022             | 영업배상<br>책임보험          | 2022-06-15<br>2023-06-15 | 5                         | 7,949              | 19,491                            | 16                   | 11,282 | -      | -      |        |
| 2023             | 영업배상<br>책임보험          | 2023-06-15<br>2024-06-15 | 5                         | 7,200              | 18,688                            | 3                    | 3,268  | 2      | 1,380  |        |

## □ 보상한도

| 담보대상                          | 보상구분    | 보상한도액(천원) |           | 비고         |
|-------------------------------|---------|-----------|-----------|------------|
|                               |         | 1인당       | 1사고당      |            |
| 배상책임<br>(학교경영자배상책임 담보 등)      | 대인      | 200,000   | 1,000,000 | 자기부담금 10만원 |
|                               | 대물      | -         | 50,000    | 자기부담금 10만원 |
| 교내·외<br>(교내·외 치료비 담보 등)       | 치료비     | 3,000     | 3,000     |            |
|                               | 사망,후유장해 | -         | -         |            |
| 신입생(OT)등<br>(신입생 학교행사 중 담보 등) | 치료비     | 3,000     | 3,000     |            |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 · 폭발 · 붕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 기<br>준<br>연<br>도 | 보험(공제)<br>상 품 명 | 시작일<br>종료일               | 건 물<br>보 험 료<br>(A) | 건 물<br>면 적<br>(B) | 연 간<br>총 보 험 료<br>(C) | 보 험 (공 제) 청 구 |     |     |     | 비 고                        |
|------------------|-----------------|--------------------------|---------------------|-------------------|-----------------------|---------------|-----|-----|-----|----------------------------|
|                  |                 |                          |                     |                   |                       | 신 체           |     | 재 물 |     |                            |
|                  |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2022             | 교 육 시 설<br>공 제  | 2022-01-01<br>2022-12-31 | 20개 동               | 145,794<br>㎡      | 26,552                | 0             | 0   | 0   | 0   | 신 체 손 해 배 상 금<br>재 난 복 구 비 |
| 2023             | 교 육 시 설<br>공 제  | 2023-01-01<br>2023-12-31 | 19개 동               | 145,795<br>㎡      | 29,431                | 0             | 0   | 0   | 0   | 신 체 손 해 배 상 금<br>재 난 복 구 비 |

#### □ 보상한도

| 담보대상 |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           | 비고       |
|------|----------------|-----------|----------|
|      | 1인당            | 1사고당      |          |
| 대인   | 150,000        | 1,000,000 | 자기부담금 없음 |
| 대물   | 200,000        | 200,000   |          |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 기<br>준<br>연<br>도 | 보험(공제)<br>상 품 명 | 시작일<br>종료일               | 1인당<br>보 험 료<br>(A) | 학 생 수<br>(B) | 연 간<br>총 보 험 료<br>(C) | 보 험 (공 제) 청 구 |     |     |     | 비 고 |
|------------------|-----------------|--------------------------|---------------------|--------------|-----------------------|---------------|-----|-----|-----|-----|
|                  |                 |                          |                     |              |                       | 인 적           |     | 물 적 |     |     |
|                  |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2022             | 연구실<br>안전공제     | 2021-12-12<br>2022-12-11 | 2                   | 3,015명       | 5,764                 | 0             | 0   | 0   | 0   |     |
| 2023             | 연구실<br>안전공제     | 2022-12-12<br>2023-12-12 | 2                   | 2,847명       | 5,644                 | 0             | 0   | 0   | 0   |     |
| 2024             | 연구실<br>안전공제     | 2023-12-12<br>2024-12-11 | 2                   | 2,753명       | 5,105                 | 0             | 0   | 0   | 0   |     |

#### □ 보상한도

| 담보대상  |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      | 비고            |
|-------|----------------|------|---------------|
|       | 1인당            | 1사고당 |               |
| 유족급여  | 200,000        | -    |               |
| 장해급여  | 200,000        | -    |               |
| 요양급여  | 2,000,000      | -    | 자기부담금 없음      |
| 장 의 비 | 10,000         | -    |               |
| 입원급여  | 50             | -    | 3일 초과 30일 한도내 |